2026년도

BSC 성과관리 자체 추진계획

대한민국 병무청
청춘예찬
여러분의 아름다운 청춘을 응원합니다!

인천병무지청
운 영 지 원 과

목 차

Ⅰ. 개 요 ····· 1

Ⅱ. 2025년도 성과 분석 ····· 2

Ⅲ. 2026년도 개선사항 ····· 3

Ⅳ. 소속기관 BSC 성과평가 ····· 8

Ⅴ. 세부 추진 계획 ····· 10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13

< 붙 임 >

1. 2026년 계량지표 목록 ····· 14
2. 2026년 계량지표 주요 변경(개선) 사항 ····· 15
3. 2026년 비계량지표 세부 평가 기준 ····· 21
4. 송무업무 협업노력도 세부 평가 기준 ····· 25
5. 비계량지표 추진실적 보고 서식 ····· 26
6. 2026년 지표정의서 ····· 36

Ⅰ 개 요

□ 배경 및 목적

○ 본청 BSC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성과관리 추진 방안 마련

○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과창출 유도

* 관련근거 : 혁신성과담당관-1786('26.6.9.) "2026년 소속기관 성과관리 기본계획 알림"

□ 2026년 성과관리 목표 추진과제

미 션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으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

비 전

병역이 자랑스러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소속기관 계량지표

-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실적
- 반부패 청렴활동
- 홍보활동 점수
- 근무혁신 추진실적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적
- 병역판정검사 수검률
- 병역면탈 단속 및 예방 실적
- 정보보호 이행실적
- 병역자원 품질관리
- 현역병 충원실적
-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실적
- 병력동원훈련소집 충원율
- 지자체병무담당전시업무교육이수율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자원관리
-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 사회복무요원 충원율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율 및 성실복무율

Ⅱ 2025년도 성과 분석

□ 소속기관 성과평가 결과 : Ⅰ그룹 BSC 종합 B등급

○ 계량지표 : 전 지표(18개) S등급 달성

△ 부서별 계량지표 S등급 달성 현황

구 분	계	운 영	병 역	현 역	사 회	복 무	동 원	고 객
지표수	18	4	2	2	3	1	2	4
달 성	18	4	2	2	3	1	2	4

○ 비계량지표

잘된 점	미흡한 점
• 청년층 및 민원대상자 중심의 참여형 홍보 활발, 지역사회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점이 우수 • 세대·관심사별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노력 우수 •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의 24시간 긴급 출국 허가 매뉴얼 제작, 자동처리시스템 안내로 시간·경제적 피해 예방을 전면에 둔 점이 우수	• 정책효과 근거자료 제한적, 정성적 서술 비중 높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참여로 사건·사고 감소한 성과는 우수하나 그에 대한 분석과 환류가 미흡 • 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심층 분석 미흡 • 단순한 병역진로설계가 아닌 실제 취업 연계 추진 필요

□ 보완할 점

○ 주기적인 추진 실적 점검 및 공유로 취약분야 적기 대응

○ 도전적·정량화된 목표설정으로 가시적·근본적 성과 도출

Ⅲ 2026년도 개선사항

1 주요 개선사항

	지금까지(As-is)	앞으로(To-be)
계량 지표	• **지표수 :** 18개 지표 - 핵심지표 11개/ 일반지표 7개	▸ **지표수 :** 18개 지표(유지) ➢ 핵심지표 11개/ 일반지표 7개 * 정책변화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정비
비계량 지표	• **추진과제** 「'25년 병무청 사업계획*」과 연계 * 82개 사업(핵심사업 24개, 주요사업 58개) • **과제선정** - 공통과제 4개 + 자율과제 2~3개 지정 평가 • **비계량 가점** - '현역병 충원율' 초과 달성 시 가점 부여 (최대 2점) • **평가운영방식** - 외부위원 평가의견 해당 소속기관 공개 - 외부위원 비계량지표 추진과제 설명자료 소속기관에 미제공	▸ **추진과제** 「'26년 병무청 사업계획*」과 연계 * 88개 사업(역점사업 25개, 주요사업 63개) ▸ **과제선정** ➢ 공통과제 4개 + 자율과제 2개 - 업무추진 역량 집중을 위한 과제 재편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한 과제수 통일 ▸ **비계량 가·감점 정비** ➢ '현역병 충원율' 가점 폐지 ➢ 폭증하는 송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가·감점 신설 * 소송업무 협업노력도(±3점) ▸ **평가운영방식 개선** - 외부위원 비계량지표 추진과제 설명자료 소속기관에 사전 제공하여 평가의 투명성 제고
기관 점수	• **가·감점**(4개 항목) : **△0.5 ~ +0.5**	▸ **항목 신설 및 세부기준 정비**

평가 항목	점수	비고
① 대외기관 시상	0.1~0.3	정량
②-1 공직기강 등	△0.1~△0.2	정량
②-2 소속기관 노력도	△0.05~+0.1	정성
③ 행정착오	△0.1~△0.5	정성
④ 청장 평가	±0.1~±0.5	정성

평가 항목	변경사항	비 고
① 국가정상화 과제 발굴	**신설**	현장중심 과제 발굴
② 대외기관 시상	**현행유지**	
③-1 공직기강 등	**정비**	자체감사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정비
③-2 소속기관 노력도	**정비**	
④ 행정착오	**현행유지**	
⑤ 청장 평가	**현행유지**	

▸ **세부기준 문구 정비를 통한 구체화**
-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평가제외 명문화
- 동일 사안에 대한 평가항목 중복 시 처리 기준 마련

2 세부 개선 내용

계량지표

기본방향	▪ **현행 지표수를 유지**하되 병무정책 변화에 맞춰 **세부평가항목** 정비

□ 운영현황

(단위 : 개)

계	기획조정	병역자원	입영동원	사회복무	대변	감사	운영
18	2	4	5	4	1	1	1

□ 주요 변경사항

현 행		개선방향
• **지표수** : 18개 지표 ➢ 핵심지표 11개/ 일반지표 7개	▶	▸ **지표수 : 18개 지표(유지)** ➢ **핵심지표 11개/ 일반지표 7개**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명 변경(2건)

□ '26년 계량지표 목록

* [붙임 1] 계량지표 주요변경사항 참고

연번	지 표 명	주관부서	연번	지 표 명	주관부서
1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실적	혁신성과	10	현역병 충원실적	현역입영
2	반부패 청렴활동	감사	11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실적 * '25년 취업맞춤특기병 운영실적에서 변경	현역기획
3	홍보활동 점수	대변인	12	병력동원훈련소집 충원율	동원관리
4	근무혁신 추진실적	운영지원	13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	동원관리
5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적	규제개혁	14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자원관리	자원관리
6	병역판정검사 수검률	병역판정	15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사회정책
7	병역면탈 단속 및 예방 실적	병역조사	16	사회복무요원 충원율	사회정책
8	정보보호 이행실적	정보보호	1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사회복무
9	병역자원 품질관리	정보관리	18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율 및 성실복무율 * '25년 보충역 편입율에서 변경	산업지원

비계량지표

기본방향	▪ 병무청 **핵심·주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 효과적 대응

□ 운영현황

(단위 : 개)

계	기획조정	병역자원	입영동원	사회복무	감사	운영
12	2	3	3	2	1	1

□ 주요 변경사항

현 행	개선방향
• **추진과제(6~7개)** ➢ 공통과제 4개+자율과제 2~3개 지정·평가 • **비계량 가점** ➢ '현역병 충원율' 목표값 초과 달성 시 가점 부여(최대 2점) 구분 | 101%초과~105%미만 | 105% 이상 점수 | 1점 | 2점 • **외부위원 비계량지표 평가** ➢ 외부위원 비계량지표 추진과제 설명자료 소속기관에 미제공	▸ **추진과제(6개)** ➢ **공통과제 4개 + 자율과제 2개** - 업무추진 역량 집중을 위한 과제 재편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한 과제수 통일 ▸ **비계량 가·감점 정비** ➢ '현역병 충원율' 가점 폐지 ➢ 폭증하는 송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가·감점 신설 * [별첨] 세부평가기준 * 소송업무 협업노력도(±3점) 횟수 | 가·감점 1건 | ± 1점 * 상·하한 ±3점 ┌ 가점: 행정쟁송 예방 └ 감점: 소송업무 해태 및 비협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적 통보, 횟수에 따라 가·감점 부여 ▸ **외부위원 비계량지표 평가 운영방식 개선** ➢ 외부위원 비계량지표 추진과제설명자료 소속기관에 사전 제공하여 평가의 투명성 제고

□ ’26년 비계량지표 추진과제 목록

연번	구분	추진과제명	주관부서	평가 연계여부
1	공통	**병역이행의 사회적 존중 확산을 위한 예우사업 추진**	혁신성과	-
2	자율	국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규제개혁	자체평가 (주요정책)
3	공통	**생애 첫 건강검진 역할 및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운영**	병역판정	자체평가 (주요정책)
4	공통	**군 소요와 청년세대를 고려한 안정적 충원**	현역입영	자체평가 (주요정책)
5	자율	병력동원태세 확립으로 유사시 안보상황 즉각 대처	동원관리	자체평가 (주요정책)
6	공통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제도 운영**	사회정책 사회복무	자체평가 (주요정책)

목표 :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기관점수

기본방향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기준 정비**로 평가의 **신뢰성 확보**

□ 주요 변경사항

현 행	개선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검증주관
▸ 신설	① 국가정상화 과제 발굴, 추진과제 선정 실적 • 기존 관행 개선 등 발굴한 국가 정상화 과제가 최종 추진과제로 선정된 경우	• 정부과제 선정 2건 이상 +0.2 1건 +0.1 • 자체과제 선정 2건 이상 +0.1 1건 +0.05	기획재정 담당관
▸ 유지	② 대외기관 시상 등 대외 공적(기관) • 가점 대상 : 차관급(각 군 대장, 광역단체장 등) 이상 * 단, 개인수상실적 제외	3건 이상 +0.3 2건 +0.2 1건 +0.1	혁신성과 담당관
▸ 정비	▸ **자체감사규정 개정에 따른 평가기준 정비** ③-1. 본청 자체감사 지적 및 공직기강 위반 등 • 자체감사지적,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갑질·성범죄, 소극행정 등 * 단순 사건사고, 개인일탈, 정책 · 제도의 문제가 아닌 업무처리상 중과실, 조직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한정 * 단,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부기관 또는 본청 자체감사에 적발된 경우는 경고(△0.05)부터 적용 ※ 평가방법 : 처분건수 기준 ③-2.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속기관의 노력도 • 특정사안에 대해 자체조사 및 신분상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중징계 △0.2 경징계 △0.1 * 경징계에 불문경고 포함 중징계 +0.3 경징계 +0.2 경고 +0.1	감사 담당관
▸ 유지	④ 행정착오로 인한 병무정책 신뢰도 저하 • 행정착오로 주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감사지적(경고, 기관경고 포함)사항 • 민원야기 부정보도 * 단순 사건사고, 개인일탈, 정책 · 제도의 문제가 아닌 업무처리상 중과실, 조직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한정 ※ 평가방법 : 감사자료·언론보도, 국·실 보고 건 등을 참고, 과실 정도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3건 이상 △0.5 2건 이상 △0.25 1건 이상 △0.1	성과관리 위원회
▸ 유지	⑤ 청장 평가(기관위상제고 및 기관관리실적) • 최종평가 시 반영	±0.1 ~ ±0.5	청장
▸ 정비	▸ **세부기준 문구 정비를 통한 구체화** ➢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평가제외 명문화 ➢ 동일 사안에 대한 평가항목 중복 시 처리기준 마련		

IV 소속기관 BSC 성과평가

1 성과평가 체계

□ 평가 개요

○ (시 기) '26. 12월

○ (기 간) '26. 1. 1. ~ 11. 30. * 비계량 지표는 1. 1. ~ 10. 23. 기준

○ (대 상) 18개 소속기관 (3개 그룹 구분)

* 그룹 I (7개 기관) :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경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그룹 II (7개 기관) :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그룹 III (4개 기관) : 연수센터, 중검소, 상담소, 대체위

□ 평가항목 및 비중

구 분	계량지표(18개)	+	비계량지표(1개)	+	기관점수(5개)
배 점	90%		10%		±0.5
평가방식	5등급 절대평가 *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상대평가(1~7위) * I·II그룹 별도 평가		정성, 정량평가 * 공직기강 등 5개 분야

□ 평가 방법

○ 계량지표(18개)

△ 평가 내용 : 성과지표별 목표대비 달성도, 절대평가

△ 평가 기준 : 달성률별 구간설정 5등급 평가

등 급 (점수)	S등급 (100점)	A등급 (92.5점)	B등급 (85점)	C등급 (77.5점)	D등급 (70점)
달성률	100%이상	98%이상	95%이상	90%이상	90%미만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정의서 기준에 따름				

△ 점수 산출 :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에 대해 자동 산출

* 지표별 평가점수 = 취득점수 × 지표별 가중치

○ 비계량지표(18개)

△ 평가 내용 : 공통과제(4개) 및 자율과제(2개), 상대평가

△ 평가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붙임 4】 세부기준

평 가 항 목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정책 효과성	기관특성 점수	가·감점
배 점	15	30	25	25	5	±3

* **Ⅰ·Ⅱ 그룹별 상대평가 :** 외부위원(6인) 평가단의 서면 평가

△ 점수 산출 : **순위에 따른 점수 부여**(순위 간 0.25점차)

순 위(그룹별)	1	2	3	4	5	6	7
평 점	10	9.75	9.50	9.25	9.00	8.75	8.50

○ 기관점수

△ 평가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0.5 ~ 0.5점) 【붙임 5】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점수	주관부서	비고
가점	▲ 국가정상화 과제 발굴	0.05 ~ 0.2	기획재정담당관	정량
가점	▲ 대외기관 시상 등 대외 공적	0.1 ~ 0.3	혁신성과담당관	정량
가감점	▲ 소속직원 공직기강 등	△0.2 ~ 0.3	감사담당관	정량
감점	▲ 행정착오로 인한 병무행정 신뢰도 저하	△0.1 ~ △0.5	성과관리위원회	정량·정성
가감점	▲ 청장 평가	±0.1 ~ ±0.5	청장	정성

□ 평가 결과 공개

○ 4등급화 공개, 상대평가(필요 시 순위공개)

구 분	계	S등급 (30%)	A등급 (30%)	B등급 (30%)	C등급 (10%)
그룹 Ⅰ	7	2	2	2	1
그룹 Ⅱ	7	2	2	2	1
그룹 Ⅲ	4	BSC평가 등급화 제외, 계량지표 및 기관점수로 평가			

* 동점기관 순위 기준 : **(1순위)** 계량평가 총점 순, **(2순위)** 비계량 평가 총점 우수기관 순, **(3순위)** 감점사유 적은 순, **(동위 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 평가결과 환류

□ 소속기관 포상

계	구 분	종합 최우수	종합 우수	비계량	특별
총1,200만원	그룹 Ⅰ	400만원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룹 Ⅱ		150만원	100만원	
	그룹 Ⅲ		100만원	-	

* 수상 요건이 중복 시 포상금액이 큰 포상만 인정, 나머지 차순위에 승계

□ 성과급 지급 시 반영

○ 5급 이상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 평가 시 반영

□ 다음 연도 성과관리 계획수립 시 활용

○ 평가 결과 분석 다음 연도 성과관리 추진계획 개선에 반영

V 세부 추진 계획

1 성과지표 등록 및 비계량 실행 계획 수립

□ 주요 내용

○ (계 량) 지표정의서

○ (비계량) 비계량지표 추진계획서

○ 등록기한 : '26. 6. 26.(금)(등록완료)

○ 등록경로 : 성과관리시스템 > 조직성과관리 > 실적관리 > 실적등록

△ 조회 후 실적입력 대상 지표명(클릭) → 등록(클릭)

2 실적 등록 및 관리

□ 연간 추진실적 등록

○ 등록기간

△ (계　량) ’26. 12. 2.(수)까지

△ (비계량) ’26. 10. 30.(금)까지　*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개인정보 제외

○ 실적 검증

△ 1차 검증

- (계　량) 소속기관 및 본청 주관부서 자체 검증
- (비계량) 지방청별, 그룹(Ⅰ,Ⅱ) 상호 교차 검증

△ 2차 검증 : 혁신성과담당관 등 검증

- 검증방법 : 성과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검증
- 오류 시 조치사항 : 감점 처리 및 성과관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구분	과실에 의한 등록 오류			고의에 의한 실적오류
	중과실	보통	경과실	
감점	0.5점	0.3점	0.1점	1점
내용	5건 이상 착오입력	3~4건 착오입력	1~2건 착오입력	미달성지표를 달성지표로 입력 시

□ 주기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실적 분석

○ 조직별 스코어카드 : 조직단위 성과달성도 모니터링

○ 성과지표별 트래킹 : 하위부서 관련지표 일괄 모니터링

정 상 (녹색)	주 의 (황색)	위 험 (적색)
90% 이상	71% ~ 89%	70% 이하

○ 지표별 추진현황,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수시 공유

□ 비계량과제 추진 T/F팀 운영

○ 목　적 : 체계적인 비계량지표 과제 추진

○ 역　할 : 추진방향 설정, 실적 점검 및 미진분야 대책 강구

○ 구　성 : 팀장(운영지원과장) 외 지표별 3명이내 부서별 추천 인원

3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 목 적

○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성과 관련 사항 심의 · 의결

○ 성과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

□ 구성 및 임무

○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

△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위원회 소집, 회의 주제 등

○ 위　원 : 각 과 과장

△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사항 심의 · 의결, 과별 실적분석 및 보고

○ 간　사 : 성과홍보계장, 서　기 : 성과관리담당

△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등 제반 행정업무 수행

□ 기 능

○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사항 심의, 자체 성과평가보상시스템 의결

○ 성과 모니터링 등 실적 분석 및 환류

□ 운 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 의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 의결

○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조직 및 직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전체 직원의 의견수렴 후 최종 의결

VI 추진 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 일정

분 야	내 용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7년1분기
기본계획	성과관리 추진 기본계획 수립					
조직평가	BSC 지표목록 확정					
	목표값 및 가중치 설정					
	성과지표 시스템 등록					
	성과지표별 실행계획 수립					
	실적등록 및 관리					
	중간점검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우수기관 포상					
	제도개선 의견수렴					
기타	성과관리담당자 회의					

□ 행정 사항

○ 계량지표 가중치 및 목표값, 비계량 실행계획서 등록 : '26. 6. 26.(금)

○ 비계량지표 추진 T/F팀 임명 : '26. 7. 3.(금)

○ 2026년 소속기관 성과지표 중간점검 : '26. 8월 중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미흡 분야 보완 : 상시

【붙임 1】

2026년 계량지표 목록

※ 총 90점 : 핵심지표 11개(5.7점), 일반지표 7개(3.9점)

연번	지 표 명	주관부서	주요 내용	측정주기
1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실적	혁신성과	일반지표	년
2	반부패 청렴활동	감 사	핵심지표 * 종합청렴도 평가 연계지표	년
3	홍보활동 점수	대 변 인	핵심지표 * 특정평가(정책소통) 연계지표	년
4	근무혁신 추진실적	운영지원	핵심지표 * 특정평가(정부혁신) 연계지표	년
5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적	규제개혁	일반지표	년
6	병역판정검사 수검률	병역판정	일반지표	년
7	병역면탈 단속 및 예방 실적	병역조사	핵심지표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지표	년
8	정보보호 이행실적	정보보호	핵심지표 * 행정관리역량평가 연계지표	년
9	병역자원 품질관리	정보관리	일반지표	년
10	현역병 충원실적	현역입영	핵심지표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지표	년
11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실적	현역기획	일반지표	년
12	병력동원훈련소집 충원율	동원관리	핵심지표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지표	년
13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	동원관리	일반지표	년
14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자원관리	자원관리	일반지표	년
15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사회정책	핵심지표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지표	년
16	사회복무요원 충원율	사회정책	핵심지표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지표	년
1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사회복무	핵심지표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지표	년
18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율 및 성실복무율	산업지원	핵심지표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지표	년

※ Ⅲ그룹 추진 지표 : 1·2·4·8번(연수센터·중앙검사소·대체위), 1·2·4·5·8번(상담소)

【붙임 2】

2026년 계량지표 주요 변경(개선) 사항

지표번호	지표명	현행(~을)	변경(~으로)	변경이유
1-01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실적	· 산식 = 이수율(100%) - 집합(대면·화상)교육 이수율 * 산출방식 : 교육이수 인원/소속기관별 선발계획인원 ×100	○ **산식 동일 (선발계획인원 수정)** * 교육이수인원은 동일연도 내 동일인 중복 참여 시 1명으로 계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효과 확산 목적
1-02	반부패 청렴 활동	· 부패방지교육(30%) · 반부패시스템 운영(10%) · 청렴 노력도(60%) - 반부패·청렴시책 추진(20) - 기관장 청렴 의지(5) - 청렴정책 홍보(20) - 예산집행 투명성(15) · 가점(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이수)	○ **평가항목 수정 및 배점 조정** · 부패방지교육(30%) · 반부패시스템 운영(10%) · 청렴 노력도(60%) - 반부패·청렴시책 추진(20) - 기관장 청렴 의지(10) - 청렴정책 홍보(30) ~~- 예산집행 투명성(15)~~ · 가점(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이수)	청렴활동에 대한 기관장 참여 유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1-03	홍보활동 점수	· 언론홍보(30%) - 기획홍보(30) * 기획기사(10)+기고·인터뷰(10)+정책현장방문(10) · 온라인/미디어홍보(50%) - 인스타그램 콘텐츠 발굴(15) - 국민 참여 코너 운영(15) * M-터뷰(7)+지방청 찾아가는 길(8) - 기관블로그 활동(10) - 미디어 홍보(10) · 현장/국민 참여 캠페인 - 병역이야기 공모전(10) - 병역이행 응원편지 보내기(10) · 가점 - 부처협업 홍보과제 미디어 홍보매체 증가(건당 1점)	○ **평가항목 세부 기준 변경 및 가점 항목 확대** · 언론홍보(30%) - 언론소통활동(30) * 기고·인터뷰(10)+현장소통보도(10)+일반보도(10) · 온라인/미디어홍보(50%) - SNS 콘텐츠 소재 발굴(10) - 국민 참여 SNS 콘텐츠 제작(20) ~~* M-터뷰(7)+지방청 찾아가는 길(8)~~ - 기관블로그 활동(10) - 미디어 홍보(10) · 국민 참여 캠페인(20%) - 병역이야기 공모전(20) ~~- 병역이행 응원편지 보내기(10)~~ · 가점(8점) - 직원 유튜버 선발·운영협조(3점) - SNS 콘텐츠 촬영·제작 등 협조(건당 1점, 최대 5점)	정책홍보기조 및 최신 홍보 흐름 반영

지표번호	지표명	현행(~을)	변경(~으로)	변경이유
1-04	근무혁신 추진실적	· 연가사용 활성화 노력도(30%) · 유연근무 활성화(30%) · 초과근무시간 활용률(20%) · 근무혁신 이행노력도(10%) · 마음건강 자가진단참여(10%)	○ **평가항목 현행유지 (세부 실적기준 조정)** · 연가사용 활성화 노력도(30%) · 유연근무 활성화(30%) · 초과근무시간 활용률(20%) · 근무혁신 이행노력도(10%) · 마음건강 자가진단참여(10%) * 참여율 달성기준 상향 (83%→83.5%)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부문)에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실시율'이 필수지표로 포함됨에 따라 관리 강화
1-05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적	· 민원처리 충실도(60점) · 민원처리 준수율(40점) · 가 · 감점	○ **변동 없음**	-
2-01	병역판정검사 수검률	· 산식 : 수검인원/목표인원 × 100 · 가점(수검률 추가 인정)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 실적 - 옴부즈맨 활동실적	○ **산식 동일(목표인원 수정), 가점 항목 조정** · 산식 : 수검인원/목표인원 × 100 · 가점(수검률 추가 인정) - '20세 검사 후 입영'제도 홍보 실적(신설)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 실적~~ ~~- 옴부즈맨 활동실적~~	정책중요도에 따른 가점 수정, '20세 검사후 입영 제도 홍보실적 신설
2-02	병역면탈 단속 및 예방 실적	· 광역수사청 (서울, 대구경북, 경인) - 송치인원(40점) - 기소율(30점) - 병역면탈예방활동(30점) · 현장단속청 - 수사의뢰(40점) - 직접수사/광역청 공조수사(20점) - 병역면탈 예방활동(40점) · 가·감점(최대 10점) : 일반사항+기피자수사	○ **평가항목 수정 (세부 실적기준 조정)** · 광역수사청(서울, 대구경북, 경인) - 송치인원(40점) - 기소율(10점) - 기피자 송치실적(20점)(신설) - 병역면탈예방활동(30점) · 현장단속청 - 수사의뢰(20점) - 직접수사/광역청 공조수사(20점) - 기피자 송치실적(20점)(신설) - 병역면탈 예방활동(40점) · 가·감점(최대 10점)	수사실적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도록 기피자 송치실적을 가점항목이 아닌 평가항목으로 전환

지표번호	지표명	현행(~을)	변경(~으로)	변경이유
2-03	정보보호 이행 실적	· 실태평가(70점) · 정보보호사고(10점) · 사이버 대응 훈련(10점) · 정보보호 학습의 날 실적(10점) · 가점(정보보호우수사례)	○ **변동 없음**	-
2-04	병역자원 품질 관리	· (병역자원 정제 처리율 ×60%)+(업무규칙 발굴률 ×40%)	○ **변동 없음**	-
3-01	현역병 충원실적	· 산식 : (입영인원/목표입영인원) × 100 - 감점(현역병 인도예측률) - 목표인원: ('22~'24년 전국대비 지방청별 징·모집 입영비중×목표값×67%) +('25년 연초 전국대비 지방청별 자원비중×목표값 ×33%) - 입영인원: 1~11월 입영인원 +12월 모집병 입영대상자 ('25.11.28.기준, 최종합격자)	○ **산식 동일(목표입영인원 수정)** · 산식 : (입영인원/목표입영인원) × 100 - 감점(현역병 인도예측률) - 목표인원: ('23~'25년 전국대비 지방청별 징·모집 입영비중×목표값×70%) +('25년 연초 전국대비 지방청별 자원비중×목표값×30%) - 입영인원: 1~11월 입영인원 +10~11월 징집병 입영인원 가중치 부여(10%) + 12월 모집병 입영대상자(최종합격자)	지방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원:입영' 비중 최종 결정 12월 모집병 최종합격자 포함 및 징집병 입영인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안으로 지방청 부담 완화
3-02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실적	· 기준인원 대비 모집률(80%)* * 소속기관별 모집인원 ÷ 소속기관별 기준인원 · 중도취소율(20%) * 포기율 19% 미만시 달성 · 가점 - 최근 2년 입영률 - 취업 성공사례 홍보 활동	○ **지표명 변경, 병역진로설계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 조정, 가점항목 조정** · 병역진로설계 유관기관 협업실적(50점)(신설) - 각 군 협업노력(20점) - 대학(비)교과과정 연계(20점) - 상담직원 역량강화교육 이수 실적(10점) - 가점(2점) · 취업맞춤특기병 운영실적(50점) - 지원율(40점) - 취소율(9점) - 홍보활동(1점)	청년미래설계 지원을 위한 기관협업 및 경력 연계로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도모

<table>
<tr><th>지표번호</th><th>지표명</th><th>현행(~을)</th><th>변경(~으로)</th><th>변경이유</th></tr>
<tr><td>3-03</td><td>병력동원 훈련소집 충원율</td><td>· 병력동원훈련소집 충원율(100%)
· 가점(1~3점)
- 나라사랑가게 선정</td><td>○ 산식 동일(목표인원 변경) 및 가점 축소
· 병력동원훈련소집 충원율(100%)
· 가점(1~2점)
- 나라사랑가게 선정</td><td>병력동원 훈련소집 충원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점 축소</td></tr>
<tr><td>3-04</td><td>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td><td>·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 교육 이수율(종합)(40%)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 교육(집합)(60%)
<table><tr><td>이수율</td><td>93% 이상</td><td>93%미만 90%이상</td><td>90%미만 85%이상</td><td>85%미만 80%이상</td><td>80% 미만</td></tr><tr><td>점수</td><td>60</td><td>58</td><td>56</td><td>54</td><td>50</td></tr></table></td><td>○ 산식 동일(목표인원 변경), 집합교육 목표이수율 상향 조정 및 가점 조정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 교육 이수율(종합)(40점)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 교육(집합)(60점)
<table><tr><td>이수율</td><td>97% 이상</td><td>97%미만 95%이상</td><td>95%미만 93%이상</td><td>93%미만 90%이상</td><td>90% 미만</td></tr><tr><td>점수</td><td>60</td><td>58</td><td>56</td><td>54</td><td>50</td></tr></table>· 가점(건별 0.5~1점, 최대2점)
- 현장체험교육 및 전시업무 교육 우수사례 홍보 활동 등</td><td>집합교육 이수율 강화로 지자체 병무담당 역량 강화</td></tr>
<tr><td>3-05</td><td>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자원관리</td><td>·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감소 노력(70%)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고발 관리(30%)
- 착오에 의한 고발 지연 : 2 ~ 6개월(건당 -0.5점)/ 7개월 이상(건담 -1점)
· 가·감점</td><td>○ 지표 세부평가기준 강화 및 가점 세부기준 조정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감소 노력(60%)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귀국독려활동 체크리스트 누락(30%)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연락처 미확보(30%)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고발 관리(40%)
- 고발 및 고발취소 인원 관리(30%)
* 측정산식 : 고발 및 보고 지연 인원 ÷ 당해연도 미귀국인원 ×그룹별 가중치
- 입국자에 대한 후속조치 소홀(10%)
· 가·감점</td><td>지방청의 미귀국자 관리 인원 규모를 고려하여 그룹별 가중치 설정 및 배점 조정</td></tr>
</table>

지표번호	지표명	현행(~을)	변경(~으로)	변경이유
4-01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 산식 : ('25년도 적정 배정 목표인원 달성률 + '26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 가산율(10%) - 사회서비스분야 배정률(5%) - 수요확대노력도(5%)	○ **산식 명확화(목표인원 변경), 목표인원 산정방법 개선** · '26년도 적정 배정 목표인원 달성률(50%) + '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률(50%) * '27년도 지방청별 자원규모에 따라 6단계 분류하여 평가 · 가산율(12.5%) - 사회서비스분야 배정률(5%) - 수요확대노력도(7.5%)	지방청별 자원규모 고려하여 구간 세분화 목표값 설정
4-02	사회복무요원 충원율	· 산식 : {(소집인원/목표인원) ×100}+가산율(%) · 가산율(6%) - 사회복지시설 목표인원 달성도 - 전년대비 충원율 향상 - 가용자원 부족으로 재학생 입영원 접수한 지방청	○ **산식 변경(목표인원 변경), 가점 항목 조정** · 산식 : 충원율 취득점수+가산점 · 가산점(최대 14점) - 사회복지시설 목표인원 달성도 - 전년대비 충원율 향상 - 자원 부족 지방청 재학생 입영원 접수받은 횟수 - 현역복무부적합자 소집 달성도	현역복무부적합자 소집 활용, 가용자원부족 지방청 충원율 제고
4-0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80%) · 복무기관 실태조사 진도율(10%) ·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이수율(10%) · 가·감점(△2~+6) -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 홍보활동 - 기관장 주관 복무기관 방문 - 사회복무요원 디딤과정 이수율 초과 달성 - (감점) 사건·사고 등 부정적 언론보도	○ **평가항목 동일(목표인원 변경)** ·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70%) · 복무기관 실태조사 진도율(10%) ·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이수율(20%) · 가/감점(△2~+6) -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 홍보활동 - 기관장 주관 복무기관 방문 - 사회복무요원 디딤과정 적정 이수율 - (감점) 사건·사고 등 부정적 언론보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수율 배점 확대

지표번호	지표명	현행(~을)	변경(~으로)	변경이유
4-04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율 및 성실복무율	·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율(70%)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30%) · 가·감점 - 홍보활동 - 성실복무율 - 교육이수율 - 소통간담회 및 합동실태조사	○ **평가항목 변경** ·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율(70%) · 성실복무율(30%) · 가·감점 - 홍보활동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 - 교육이수율 - 소통간담회 및 합동실태조사	보충역자원 감소 추세를 고려, 평가항목을 성실복무율로 변경하고 편입률은 가점 항목으로 조정

【붙임 3】

비계량지표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계획 수립의 적절성 (15)	○ 여건 및 현황 분석, 추진방향 설정의 적절성	5점
	○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및 방안의 적합성	5점
	○ 적극적 목표설정	5점
시행 과정의 적절성 (30)	○ 추진 일정의 충실성	5점
	○ 홍보활동 노력도	7점
	○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업체계 구축	3점
	○ 협업노력도	3점
	○ 협업수준·실질적 효과, 협업 우수사례	12점
성과 달성도 (25)	○ 추진사업의 적절성	13점
	○ 추진사업의 성과달성도	12점
정책 효과성 (25)	○ 정책효과 발생정도	20점
	○ 전년 대비 업무개선 정도	5점
기관 특성 (5)	○ 기관 업무 여건 등 * 혁신성과담당관 일괄 평가	5점
가·감점 (±3)	○ 송무업무 협업노력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적 통보, 횟수에 따라 가·감점 부여	±3점

비계량 지표 항목별 세부 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기준</th><th>측정항목</th><th>측정방법 및 배점</th></tr>
<tr><td rowspan="3">계획
수립의
적절성
(15)</td><td>여건 및
현황분석
추진방향 설정
과정의 적절성</td><td>ㅇ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여부
ㅇ 조직 내 토론·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에 의한 사업 선정여부</td><td><정성적 측정>
ㅇ 여건 및 현황 분석 추진 방향의 적절성(5점)
<table><tr><td>평 가</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tr><td>배 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r><td>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및
방안 설정의
적합성</td><td>ㅇ 비계량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여부
ㅇ 사업 효과 분석 또는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도출된 보완 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td><td><정성적 측정>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방안의 적합성(5점)
<table><tr><td>평 가</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tr><td>배 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r><td>적극적
목표설정</td><td>ㅇ 도전적, 적극적 목표 설정 정도
ㅇ 추진계획 세부사업별 산출 목표 구체적 설정 여부
ㅇ 전년도 미달성 분야에 대한 도전적 목표설정 정도</td><td><정성적 측정>
ㅇ 목표설정의 구체성(5점)
<table><tr><td>평 가</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tr><td>배 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r><td rowspan="2">시행
과정의
적절성
(30)</td><td>추진일정의
충실성</td><td>ㅇ 내실있는 추진일정 수립여부
ㅇ 실행기간의 적절성, 일정 준수여부 측정</td><td><정성적 측정>
ㅇ 추진 일정의 충실성(5점)
<table><tr><td>평 가</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r><tr><td>배 점</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r><td>홍보활동
노력도</td><td>ㅇ 사업관련 홍보노력
* 언론, 현장, 내부 인트라넷홍보 등
ㅇ 홍보를 통한 효과
ㅇ 국민참여 확대 노력도
* 자체 경진대회 심사 등에 국민 참여, 입영문화제 국민 소리함 설치, 찾아가는 병무 행정 설명회, 국민 초청 행사(검사 현장 참여 등), 국민 생각함 안건참여 등</td><td><정성적 측정>
ㅇ 홍보활동 노력도(7점)
<table><tr><td>평 가</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tr><td>배 점</td><td>7~6</td><td>5~4</td><td>3</td><td>2~1</td><td>0</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기준</th><th>측정항목</th><th>측정방법 및 배점</th></tr>
<tr><td rowspan="3"></td><td>협업체계 구축</td><td>ㅇ사업 관련 협약 체결 및 협의회 개최 횟수
ㅇ유관 기관과 회의 개최 및 타 기관 주최 협의회 참석 횟수</td><td><정량적 측정>
ㅇ관련기관・정책과의 협업체계 구축(3점)
<table><tr><th>내 용</th><th>1회당</th></tr><tr><td>협의회 개최</td><td>0.5점</td></tr><tr><td>협약 체결</td><td>1점</td></tr><tr><td>타기관 주최 협의회 참석</td><td>0.2점</td></tr><tr><td>유관기관 회의개최</td><td>0.2점</td></tr></table>※ 협의회는 관련정책 협업체계를 위한 정책해결 시까지 지속성 유지(1차, 2차 협의회)</td></tr>
<tr><td>협업노력도</td><td>ㅇ 새로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및 청내 부서 간 협업수준</td><td><정성적 측정>
ㅇ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부서 간 지원, 협업을 위한 노력 정도(3점)
<table><tr><th>평 가</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r><tr><td>배 점</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r><td>협업 수준·
실질적 효과,
협업 우수사례</td><td>ㅇ협업에 의한 사업 개선 효과, 협업 우수사례</td><td><정성적 측정>
ㅇ협업 수준·실질적 효과, 협업 우수 사례(12점)
<table><tr><th>평 가</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tr><td>배 점</td><td>12~10</td><td>9~7</td><td>6~4</td><td>3~1</td><td>0</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r><td rowspan="2">성과
달성도
(25)</td><td>추진 사업의
적절성</td><td>ㅇ세부 과제에 따른 추진 사업의 연계성 정도
ㅇ어떤 문제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는지</td><td><정성적 측정>
ㅇ추진 사업의 적절성(13점)
<table><tr><th>평 가</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tr><td>배 점</td><td>13~11</td><td>10~8</td><td>7~5</td><td>4~2</td><td>1~0</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r><td>추진 사업의
성과 달성도</td><td>ㅇ예산/비용 절감 효과 또는 민원만족도 지수 등
ㅇ사업의 진척률
ㅇ직원참여도 및 내부만족도</td><td><정성적 측정>
ㅇ추진 사업의 성과 달성도(12점)
<table><tr><th>평 가</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r><tr><td>배 점</td><td>12~10</td><td>9~7</td><td>6~4</td><td>3~1</td><td>0</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기준</th><th>측정항목</th><th>측정방법 및 배점</th></tr>
<tr><td rowspan="2">정책
효과성
(25)</td><td>정책 효과
발생 정도</td><td>ㅇ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정도
ㅇ 국민 불편 해소, 편익 증진 정도
ㅇ 비계량 목표(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으로 국민체감성과 창출)에 기여한 정도</td><td><정성적 측정>
ㅇ 정책효과 발생 정도(20점)
<table><tr><td>평 가</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tr><td>배 점</td><td>20~17</td><td>16~12</td><td>11~7</td><td>6~2</td><td>1~0</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r><td>일하는 방식
개선</td><td>ㅇ 사업을 통해 업무 절차를 개선한 사례
ㅇ 업무 개선으로 직원 근무 만족도 향상 정도
ㅇ 보고· 회의 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례</td><td><정성적 측정>
ㅇ 일하는 방식 개선 정도(5점)
<table><tr><td>평 가</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tr><td>배 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2등급’ 이상은 대상의 40% 이하</td></tr>
<tr><td>기관
특성
(5)</td><td>기관 업무
여건 등</td><td>ㅇ 자원관리, 민원 처리 등 기관 별 업무 여건 평가</td><td><정량적 측정>
ㅇ 기관 특성(5점)
※ 별도 평가표에 의거 혁신성과담당관실에서 평가</td></tr>
<tr><td>가·감점
(±3)</td><td>송무업무
협업노력도</td><td>ㅇ 효율적 송무업무를 위한 협업 노력도 평가</td><td><정량적 측정>(신설)
ㅇ 효율적 송무업무를 위한 협업 노력도
<table><tr><td>횟수</td><td>가·감점</td></tr><tr><td>1건</td><td>± 1점</td></tr></table>* 상·하한 ± 3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적 통보, 횟수에 따라 혁신성과담당관 감점 부여</td></tr>
</table>

【붙임 4】

「송무업무 협업노력도」 세부평가기준

구 분	항 목	비 고
가 점 (건당 1점)	**행정쟁송 예방**	
	1. 제도개선 건의 반영된 경우 · 패소 원인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법무팀에서 본청 소관 부서에 개선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 제도개선 의견서 제출(자유형식) · 미비점 명시 · 개선방향 제시
	2. 사전분쟁 해소 · 적극행정위원회에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후 수용되어 잠재적 분쟁을 해결하는 등 행정쟁송을 예방한 경우	· 사례 및 증빙자료 제출
감 점 (건당 -1점)	**소송업무 해태 및 비협조**	
	1.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소송수행 차질 초래 **· 지연제출** * 요청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실제출** ① 사실관계 오인 및 대응논리 부족 *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 및 관련 부서간 협의 미이행 등 사실관계 혼선 야기 또는 소송대응논리 일관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② 핵심자료 누락,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자료 또는 가독성 떨어지는 스캔본 제출 등 **· 제출거부** * 담당자 부재 또는 본청 소관부서, 타청 사안이라며 소송수행 책임회피 등	· 감점 적용 전 법무팀의 보완요청(1회, 메모보고 등)
	2. 소송 중 발견한 착오 처분에 대한 정정 미실시 · 법령 위반 또는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판결패소 시까지 정정을 유보하는 경우 등	· 감점 적용 전 법무팀의 정정 등 권고(1회, 메모보고 등)

【붙임 5】

비계량 추진계획 보고서(기관명)

※ 현재의 글꼴/크기, 줄 간격(180%), 문단모양(문단위3) 등 평가보고서의 편집체계 유지
- 용지여백[위쪽 15, 머리말 10, 왼쪽·오른쪽 20, 꼬리말 10, 아래쪽 15] ±5 이내에서 유지
- 총 8쪽 이내[목차, 전체 추진일정 제외]

1 추진 개요(헤드라인18)

□ 배경/목적(견고딕16)

❍ 휴먼명조15(진하게)

○ 휴먼명조15

<착안사항>
- 2025년 비계량 과제 추진 배경과 목적을 환경의 변화, 기관의 여건, 기관장 지시, 종전 업무추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술
☞ what이 아닌 why('무엇을'이 아닌 '왜')가 초점임

□ 대내외 여건 및 현황 분석

❍

‣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대내외적 **유불리한 여건**(인력·조직 포함), **환경변화, 갈등 요인,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간략히 제시

□ 미흡사항(원인) / 개선방안

❍

2 추진체계 및 방향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

○

‣ 비계량 목표 및 과제와 추진 사업들과의 연관성
‣ 상기 배경/목적과 관련하여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내용에 관해 기술하고, 필요 시 **상위목표와의 관계도(체계도)**를 활용하여 기술

3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과제명(헤드라인18)

1 사업명(헤드라인16)

□ 추진 배경

○ 휴먼명조15(진하게)

- ○ 휴먼명조15

※ 줄 간격 180%

□ 추진 계획

○ 소통·협업, 홍보, 사업 수요자(국민, 직원) 참여 계획 등 항목별 작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실행과제별 도전적, 적극적 목표설정(전년 실적 대비)
- ‣ 사업추진실적 확인을 위한 세부사업별 구체적 산출목표치 제시

4 추진 일정

< '26년도 비계량 지표 추진계획 >

추 진 계 획	추진일정 (기간 기재)	비고
세부과제 1		
1-1. 사업명	5~6월, 7~8월	
1) 주요활동명	5월	
2) 주요활동명		
세부과제 2		

- ‣ 사업 전체 연간 계획으로 계획서 전체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일정이 과도하게 광범위하지 않게 작성.

비계량 추진실적 보고서[기관명]

※ 현재의 글꼴/크기, 줄 간격, 문단모양(문단위3) 등 평가보고서의 편집체계 유지(총 10쪽 이내)
- 용지여백[위쪽 15, 머리말 10, 왼쪽·오른쪽 20, 꼬리말 10, 아래쪽 15] ±5 이내에서 유지

평가보고서 자료작성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국 유일, 전국 최다, 전국 최초 등'의 확인되지 않은 표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 증빙 첨부 사진·그림 파일 등은 용량을 줄여서 첨부, 증빙 작성 시 일자·활동 내용 반드시 기재

1 추진 개요(헤드라인18)

□ 배경/목적(견고딕16)

❍ 휴먼명조15(진하게)

○ 휴먼명조15

※ 줄 간격 180%

<착안사항>
- 2026년 비계량 과제 추진 배경과 목적을 환경의 변화, 기관의 여건, 기관장 지시, 종전 업무추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술
  ☞ what이 아닌 why('무엇을'이 아닌 '왜')가 초점임

□ 대내외 정책추진여건

❍

▸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대내외적 **유·불리한 여건, 환경변화, 갈등요인, 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 등을 간략히 제시

□ 주요 내용(추진 사업)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핵심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시

○

▸ 상기 배경/목적과 관련하여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필요 시 상위목표와의 관계도(체계도)를 활용하여 기술
▸ 실적이 부진하거나 목표가 미달성된 원인이 **외부환경 요인의 변화** 등이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함께 기술

2 세부과제별 추진 사업

□ 세부 과제명

○ 주요 사업 및 성과

<착안사항>

- 사업추진 성과, 효과가 계획상 제시된 정책수혜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 기술
  (만족도 조사, 언론보도 인용 등 구체적 자료 증빙으로 제시, 전 청 공통적 추진사항은 제외 다만, 추진 중 다른 청과의 차별성 있는 경우에 차별성에 초점을 맞춰 기재)
- 추진 성과, 대외기관 수상, 업무개선 정도 등을 가급적 계량적 실적 또는 가시적 성과 위주로 기술(**도표나 그림 활용 가능하나 백화점식 사업 나열 지양**)
- 계량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성과에 대해선 추진실적과 연계하여 추진성과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되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화자찬식의 표현은 가급적 지양**
  예) 언론의 보도나, 전문가의 긍정적 발언 등을 소개하며 구체적·논리적으로 제시

□ 세부 과제명

○ 주요 사업 및 성과

□ 미흡사항/개선보완 사항

○

<착안사항>

-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또는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기술(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개선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성과 관련하여 유리할 수 있음에 착안
  ※ 장애 발생 또는 갈등관리 등에 관한 사례 기술

3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1 계획수립의 적절성(충실성) "작성 비대상(추진계획서로 평가)"

1-1 여건 및 현황 분석, 추진방향 설정의 적절성 [5점]

1-2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방안의 적합성 [5점]

1-3 적극적 목표설정 [5점]

2 시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 일정의 충실성 [5점]

달성률 :	점수 :

○ 비계량 세부 과제 중 추진 사업 계획 ○○개중 ○○개 계획 준수 (또는 ○○개 계획 일정 지연) 계획달성률 ○○% <증2-1>

<사업별 추진계획 >

계획내용	달성여부	비고

☞ 계획 지연 또는 미달성 사유(외부환경 요인만 작성)
※ 외부환경 요인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명 불요

2-2 홍보활동 노력도 [7점]

점수 :

○ 추진 사업과 관련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노력 및 효과성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홍보활동 추진

※ 지체 경진대회 심사 등에 국민 참여·점수반영, 국민 참여·초청 행사(검사현장 참여 등), 국민참여 효과(언론보도, 현장호응 등), 국민생각함 안건참여(단, 참여의견 100건 이상), 언론, 현장홍보, 내부 인트라넷(다모아 공지사항 등 채널별 홍보 실적 및 효과(언론보도, 현장호응 등) 구체적 증빙은 붙임으로 첨부<증2-2>

2-3 협업체계 구축 [3점]

점수:

관련 기관	협의 내용	횟수	날짜
	예) 협의회 개최, 협약 체결, 타기관 주최 협의회 참석,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		

※ 내용별로 횟수 및 날짜 기재 후 증빙자료는 붙임으로 첨부<증2-3>

2-4 협업노력도 [3점]

점수:

○ 새로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및 청내 부서 간 협업수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부서 간 지원, 협업을 위한 노력 정도

※ 구체적 증빙이 있는 경우 붙임으로 첨부<증2-4>

2-5 협업수준 및 실질적 효과, 협업 우수사례 [12점]

점수:

○ 협업에 의한 사업 개선 효과, 협업 우수사례

- 유관기관 및 각과와 MOU 체결 등 긴밀한 연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을 수행한 사례 및 효과
- 유관기관 협업 T/F 구축·운영 및 정책협의 실적과 협의 결과에 대해 반영한 실적, 우수사례 등

※ 구체적 증빙이 있는 경우 붙임으로 첨부<증2-5>

3 성과 달성도

3-1 추진사업의 적절성 [13점]

점수:

○ 세부 과제에 따른 추진사업의 연계성 정도

- 추진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절하였는지, 어떤 문제점 또는 목표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설명

3-2 추진 사업의 성과 달성도 [12점]

점수 :

○ 각 사업의 단순 실적 나열이 아니라 가급적 '계량화'된 성과달성도 제시

- 예산/비용 절감 효과, 진척률, 만족도 지수, 직원 참여도 및 효과성 등

※ 구체적 증빙이 있는 경우 붙임으로 첨부<증3-2>

4 정책효과성

4-1 정책 효과 발생 정도 [20점]

점수 :

○ 정책 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정도

- 국민(병역의무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정도
  - * 개선 내용의 타 기관과의 차별성, 창의성
-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여 일정대로 사업추진 사례
- 해당 사업에 대한 전파/홍보 실적 등

※ 구체적 증빙이 있는 경우 붙임으로 첨부<증 4-1>

○ 국민불편해소, 편익증진 정도

- 국민체감 성과, 현장소통 노력,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기여 사례 작성

○ 비계량 목표(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달성에 기여 정도

- 해당 사업이 비계량 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과 어떤 인과 관계를 갖는지, 목표 달성 연계 정도를 기술

4-2 일하는 방식 개선 정도 [5점]

점수 :

○ 업무 절차를 개선한 사례, 회의·보고 문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적 등

※ 구체적 증빙이 있는 경우 붙임으로 첨부<증4-2>

5 기관 특성 [5점] : 작성 불요

점수 :

평가분야	세부내용	비중	세부평가 기준	점수
자원 관리 (55)	병역판정검사	15	병역판정검사 실수검 인원/직원 수	
	현 역	15	징·모집 입영인원/직원 수	
	보 충 역	15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전문·산업·승선근무배정인원+사회복무관리인원+전문·산업·승선근무관리인원 및 업체수)/직원 수	
	예 비 군	10	동원 훈련인원/직원 수	
민 원 처 리		25	법정민원처리 건수/직원 수	
행 사 지 원		5	국회업무 지원, 전국단위 행사개최 등	
업 무 처 리 환 경		15	지역특성, 1인당 관리 자원 수	

※ 세부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예정이며 평가 전 기관특성 평가자료 제출

※ 평가 반영방법 : 3단계 등급화 반영

구 분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
등급부여기준	직무난이도 평가결과 90점 이상	직무난이도 평가결과 80점 이상	직무난이도 평가결과 80점 미만
반영점수	5점	4.63점	4.25점

※ 점수환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6 가점 [±3점] : 작성 불요

ㅇ 효율적 송무업무를 위한 협업 노력도

횟수	가감점
1건	± 1점

* 상·하한 ± 3점

※ '26. 11. 30. 기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적 통보, 횟수에 따라 혁신성과담당관 감점 부여

<별첨 2>

기관 특성 평가자료 제출(○○청) 9. 30. 현재

□ 자원별 연간 계획인원 및 관리인원

병역판정검사 실수검 인원	징·모집 입영인원	보 충 역												동원훈련 인원
		소계	사회복무계획인원	전문배정인원	산업배정인원	승선근무배정	사회복무관리인원	전문관리인원	업체수	산업관리인원	업체수	승선근무관리	업체수	

□ 과별 정원 및 현원(12개청)

* 전화번호부 기준인원, 파견 등은 제외

부서명	정 원					현 원				
	계	일반직	관리운영직			계	일반직	관리운영직		
			계	사무직	기타			계	사무직	기타
계										
운영지원										
병역판정검사										
○○과										
○○과										
○○과										

※ 병역판정관 및 기관장은 운영지원과에 포함, 시간제는 일반직으로 포함(시간제별 인원 산정)

□ 관련분야 근무인원(제주, 강원영동청)

구분		계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	동원업무
계						
운영지원과	6급 이상					
	7급 이하					
병역관리과	6급 이상					
	7급 이하					

※ 1인이 업무 분야 중복 담당 시(과·계장 포함), 중복 횟수로 나눠서 인원 산정
예) A계장이 검사, 현역 업무 담당 시 6급 이상 각 분야 0.5로 산정하여 작성

□ 전국규모 행사 개최 실적

* 본청 주관 행사에 공동 참여시 포함

행 사 명	개최일자	참석기관	참석인원	행사 주요내용

※ 행사개최계획 및 개최결과 첨부(개최결과에는 참석기관, 인원 반드시 포함)

※ 입영문화제 등 전청 실시 행사 제외, 해당 청 자체 행사(지자체 업무 협약 등) 제외

<별첨3>

기관특성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분야	세부 내용	비중	세부평가 기준	S등급 (100)	A등급 (92.5)	B등급 (85)	C등급 (77.5)
자원 관리 (55)	병역 판정	15	병역판정검사 실수검인원* /직원 수 * BSC지표기준인원	상위 20%	40%	30%	10%
	현역	15	징집·모집 입영인원 /직원 수				
	보충역	15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전문·산업기능 요원·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인원+전문·산업·승선근무예비역 관리인원 및 업체수)/직원 수				
	예비군	10	동원 훈련인원 /직원 수				
민원처리 (9.30. 기준)		25	법정민원처리 건수/직원 수				
행사지원		5	국회업무 지원, 행사개최 등	상시 지원청	전국규모행사 2회 이상	전국규모행사 2회 미만	미실시
업무처리 환경		15	1인당 관리자원 수(10)	7000명 이상	4,000명 이상	4,000명 미만	해당 없음
			1인당 자원 집적률(5) *(관리자원 면적)/직원 수	1미만	1이상~ 3미만	3이상	해당 없음

※ 자원수(수검인원, 입영인원 등) : 2026년도 관리자원 수

※ 직원 수(9.30.현재) : 관련분야 과 단위 현원(일반직+관리운영)

※ 업무처리 환경 : 혁신성과담당관 작성

【붙임 6】

2026년 지표정의서

① 지표명 : 1-01.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실적

② **주관부서**	혁신성과담당관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소속기관장		
③ **전략목표**	국민체감 병무행정으로 포용국가 조성 기여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국민체감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핵심인재 육성 지원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

⑬ **지표산식**	병무연수원 교육훈련 이수율
⑭ **세부설명**	1. 지표의 취지(목적) ○ 병무연수원 교육훈련 계획 인원 대비 이수인원의 적정화로 경제성 및 효율성 평가 2. 지표산식 설명 ○ 지표산식 : 집합(대면·화상)교육 이수율(100%) ○ 산출방식 : 교육이수 인원 / 소속기관별 선발계획인원*100 * 선발계획인원 : 소속기관 현원 대비「2026년 병무연수원 교육훈련 계획」교육인원 배분 * 교육이수인원은 동일연도 내 동일인 중복 참여시 1명으로 계산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목표설정 기준값(유형) : 100%(목표값 직접 설정)
⑯ **점수 산출**	

등급(점수)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	C등급(77.5)	D등급(70)
달성률	100%이상	100%미만~98%이상	98%미만~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

⑰ **Data Source**	○ 교육실시 현황

① 지표명 : 1-02. 반부패 청렴활동

★ 대외평가(종합청렴도 평가) 연계

② 주관부서	감사담당관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소속기관장		
③ 전략목표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청렴 마인드 제고 및 체계적 추진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산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반부패 청렴활동 체계적 추진을 통한 기관 청렴도 제고 2. 산출방식: 평가항목별 점수(평가점수×비중)의 합 + 가점

평가항목			비중 (%)	평가점수(달성률 기준)			
				100점	95점	90점	85점
① 부패방지 교육	전 직원 부패방지교육 2시간 이상 이수 * 기간 : '25. 10. 1. ~ '26. 9. 30.		15	100%	100%미만~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고위공무원, 기관장, 승진자, 신규자 부패방지교육 1시간 이상 대면 이수 * 기간 : '25. 10. 1. ~ '26. 9. 30.		15	100%	100%미만~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② 반부패 시스템 운영	부패경보 시스템	설문 결과 모니터링	5	월 1회	-	-	-
	병무감사 시스템	결함통보사항 조치	5	월 2회	월 1회	-	-

① 지표명 : 1-02. 반부패 청렴활동

★ 대외평가(종합청렴도 평가) 연계

③ 청렴 노력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5	계획 수립	-	-	-
		분기별 이행실적 제출	15	3회	2회	1회	-
	기관장 청렴 의지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실천한 사례	10	2건 이상	1건 이상	-	-
	내·외부 청렴정책 홍보	반부패 청렴활동(시책) 병무청 누리집 등록	10	3건 이상	2건	1건	1건 미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내부직원 홍보	10	2회	1회	-	-
		직원 간 갈등(갑질) 개선 자체 노력 내부직원 홍보	10	2회	1회	-	-
④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내부강사, 전문) 이수			가점	3점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① 부패방지교육

▶ (전 직원) 연 2시간 이상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1회 이상

- 전 직원 :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대상 : '26. 9. 30. 기준 현원, '25. 10. 1. ~ '26. 9. 30. 기간 중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사람

** 소속기관 기준 : '26. 9월 정기전보 인사자는 전 소속기관 대상으로 평가

- 필수 법령 교육 통합실시 가능(하나의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을 통합하여 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고위공무원, 기관장, 승진자, 신규자) 대면 교육 1시간 이상 필수

① 지표명 : 1-02. 반부패 청렴활동

★ 대외평가(종합청렴도 평가) 연계

	② 반부패 시스템 운영 ▶ 부패경보시스템 : 월 1회 설문결과 추출(메모보고) 자료에 모니터링 결과 의견 회신으로 갈음 ▶ 병무감사시스템 : '오류 발생 목록'에서 추출되는 자료 월 2회 이상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확인 ③ 청렴노력도 ▶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 계획 수립 및 분기 이행실적 제출 ▶ 기관장 청렴 의지 : 직원 소통, 언론홍보(기고 등), 직원 청렴교육, 청렴 선서, 서한문 등 ▶ 반부패 청렴활동 등록 : 주요 청렴활동 병무청 누리집* 게시 * 병무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청렴자료공개 - 반부패 청렴활동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내부직원 홍보 : 자체 게시판, 메모보고, 전자우편 등 * 관련규정, 신고 방법, 교육자료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이면 인정 ▶ 직원 간 갈등(갑질) 개선 노력 내부직원 홍보 : 자체 게시판, 메모보고, 전자우편 등 * 본청에서 추진하는 내용(내부신고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안내도 인정 ④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 이수 : 청렴연수원 해당 과정 이수 확인(이수 인원수 관계없이 3점만 부여)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사회복무연수센터, 대체역심사위원회 평가 제외 항목 ▶ ② 반부패 시스템 운영, ③-4 반부패 청렴활동(시책) 병무청 누리집 등록
⑯ 점수 산출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
⑰ Data Source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① 지표명 : 1-03. 홍보활동 점수

★ 특정평가(정책소통) 연계

② 주관부서	대변인실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최적의 병력충원과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로 튼튼한 안보 지원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긍정적 병역인식 문화 확산과 자긍심 제고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홍보계획 수립 및 지역특색 연계, 홍보활동 강화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
⑭ 세부설명	○ 항목별 세부 내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상한 점수
언론홍보 (30)	언론소통 활동	○ 언론소통 활동 : 30점(기고·인터뷰 10점 + 현장소통 보도 10점 + 일반 보도 10점)	30

기관		평가기준		
		10점	9점	8점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기고·인터뷰	4건 이상	3건	2건 이하
	현장소통 보도	30건 이상	29 ~ 25건	24건 이하
	일반보도	75건 이상	74 ~ 65건	64건 이하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기북부	기고·인터뷰	3건 이상	2건	1건 이하
	현장소통 보도	25건 이상	24 ~ 20건	19건 이하
	일반보도	67건 이상	66 ~ 60건	59건 이하
제주, 강원영동	기고·인터뷰	2건 이상	1건	0건
	현장소통 보도	20건 이상	19 ~ 15건	14건 이하
	일반보도	60건 이상	49 ~ 45건	44건 이하

① 지표명 : 1-03. 홍보활동 점수

★ 특정평가(정책소통) 연계

<table>
<tr><th>평가분야</th><th>평가항목</th><th>평 가 기 준</th><th>상한 점수</th></tr>
<tr><td>언론홍보
(30)</td><td>언론소통
활동</td><td>- 기고·인터뷰 : 청장, 차장, 소속기관장, 외부위원(자체평가, 정책자문위원 등)
- 현장소통 보도 : (정책현장 방문) 청장, 차장, 국장(본청), 소속기관장 현장방문
(이해자 간담회) 외부기관 및 단체·인사, 민간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회의·협약식 등 *기관 내부회의·행사 제외
- 일반보도 : 기고·인터뷰, 현장소통 보도를 제외한 언론보도 실적
※ 언론소통 활동 실적은 매체에 게재된 것에 한함(미보도 시 인정 제외), 포토뉴스 제외</td><td>30</td></tr>
<tr><td rowspan="4">온라인 / 미디어 홍보
(50)</td><td>SNS 콘텐츠 소재 발굴</td><td>○ 기관 SNS 게시 콘텐츠 월 1회(2~11월) 발굴 : 10점
* 타 기관 SNS 콘텐츠, 밈(meme) 등 기관 SNS 홍보에 참고할 아이디어 제출
* (평가방식) 100% 달성 시 : 10점(미제출 분기 발생 시 건당 2.5점 감점)</td><td>10</td></tr>
<tr><td>국민참여 SNS 콘텐츠 제작</td><td>○ 청춘응원영상 : 20점
- 대상 : 일반국민(병역의무자 및 가족 등 포함)
<table>
<tr><td>기관</td><td>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경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td><td>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td></tr>
<tr><td rowspan="2">목표</td><td>일반국민</td><td>일반국민</td></tr>
<tr><td>2건</td><td>1건</td></tr>
</table>
* (평가방식) 목표 2건 지방청 : 2건 달성(20), 1건 달성(18점), 미달성(15점)
목표 1건 지방청 : 1건 달성(20), 미달성(15점)
* 기관 SNS에 게재된 콘텐츠에 한함(미게재 시 인정 제외)</td><td>20</td></tr>
<tr><td>기관 블로그 활동</td><td>○ 블로그(청춘예찬)기자단 활용 홍보 : 10점
* 소속기관의 현장취재・자료제공 등 협조로 게재된 ‘청춘예찬’ 블로그 포스팅 건수 (소속기관 공문 근거)
* (평가방식) 연 7건 이상 : 10점(7건 미만, 건당 1점 감점)
단, 제주는 연 2건 이상 : 10점(2건 미만, 건당 3.5점 감점)</td><td>10</td></tr>
<tr><td>미디어 홍보
(매체협업)</td><td>○ 문체부 선정, 부처협업 홍보 과제 미디어 활용 홍보 : 10점
* 월별 과제 1건이라도 미이행 시 매월 1점 감점
* 불시점검(본청, 외부기관)을 통해 운영 미흡사례 적발 시 건당 1점 감점
* 전년 대비 매체(영상, 문자) 수 감소 시 건당 1점 감점</td><td>10</td></tr>
</table>

① 지표명 : 1-03. 홍보활동 점수

★ 특정평가(정책소통) 연계

<table>
<tr><td></td><td>
<table>
<tr><th>평가분야</th><th>평가항목</th><th>평 가 기 준</th><th>상한 점수</th></tr>
<tr><td>국민 참여 캠페인 (20)</td><td>병역이야기 공모전 (청춘예찬 영화제)</td><td>○ 병역이야기 공모전(청춘예찬 영화제) : 20점
<table>
<tr><td>기관</td><td>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경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td><td>충북, 전북, 경남, 경기북부</td><td>강원, 제주, 강원영동</td></tr>
<tr><td>목표</td><td>12건</td><td>8건</td><td>5건</td></tr>
</table>
* 점수 : (접수작 / 청별 목표) × 10 → 소수점 첫 번째 올림</td><td>20</td></tr>
<tr><td colspan="2">가점</td><td>○ 직원 유튜버 선발·운영 협조 : 3점
* 해당 지방(지)청 소속 직원이 활동 시 부여(인원수와 관계 없이 3점 부여)
○ SNS 콘텐츠 촬영·제작 등 협조(건당 1점) * 최대 5점</td><td>8</td></tr>
</table>
</td></tr>
<tr><td>⑮ 목표값 설정 기준</td><td>○ 목표설정 기준값 유형 : 기타(목표값 100)</td></tr>
<tr><td>⑯ 점수 산출</td><td>○ 평가항목별 취득점수</td></tr>
<tr><td>⑰ Data Source</td><td>○ 시스템 등록값, 주간 홍보실적 제출 자료 등</td></tr>
</table>

① 지표명 : 1-04. 근무혁신 추진실적

★ 특정평가(정부혁신)연계

②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소속기관장		
③ 전략목표	국민체감 병무행정으로 행복한 사회 구현 기여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국민체감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과장급이상 직무성과 계약 시 "성과목표"에 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 부여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수

⑬ 지표산식	연가사용 활성화 노력도+유연근무활성화+자기주도 근무제 활용률+근무혁신 이행 노력도+마음건강 자가진단 참여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업무능률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 혁신 추진
2. 지표산식 설명 * '26년 정부업무평가, 인사혁신수준진단 등 성과지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연가 사용 활성화 노력도	○ 연가 사용 활성화 노력도 : 연가사용률(25점) + 연가활성화 노력도(5점) ① 연가 사용률 : 연 1회 평가(연가 사용 일수/실근무 반영 연가 일수) * 100 구 분 / 81%이상 / 81%미만 점 수 / 25점 / 23점 * '26년 연가 사용 일수 = '25년 당겨쓴 연가 포함(저축연가 사용 미포함) 사전 결재 받은 경우에 한해 12월 사용 예정 연가 일수 포함(평가 기준 11.30.) * 제외대상 : 병역판정검사전담의, 현업근무·교대근무 직원, 상설 병역판정검사장 직원 ※ 상설 병역판정검사장 직원 :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외 연가는 모두 사용 (8개 상설 병역판정검사장 직원 및 3개 이동검사반 의료직원 중 1년간 검사업무 종사한 직원) ② 연가사용 활성화 노력도 : 연가사용 현황 기관장에게 보고(연 2회) 여부 연가사용 현황 보고 / 2회 이상 보고 / 1회 보고 / 미실시 점 수 / 5점 / 3점 / 0점 * 사용 현황 보고 시 전년도 대비 연가사용 일수 증감 실적, 연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포함 ※ 4급 이상 간부진 1인당 평균 연가일수(17일) 목표 미달 시 : -5점	30

① 지표명 : 1-04. 근무혁신 추진실적

★ 특정평가(정부혁신)연계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 가 기 준</th><th>배점</th></tr>
<tr><td>유연근무
활성화</td><td>○ 유연근무 사용률(전 직원) : 유연근무제 12일 이상 실시 인원 / 총 현원(평가 기준 11. 30.)
<table><tr><td>구 분</td><td>94.8%이상</td><td>94.8% 미만</td></tr><tr><td>점 수</td><td>30</td><td>25</td></tr></table>※ 4급 이상 유연근무 사용 목표(94.8%) 미달 시 : -5점</td><td>30</td></tr>
<tr><td>「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초과근무시간
활용률</td><td>○ 초과근무시간 활용률 : 총량 관리의 적절성 및 부당 수령 관리·점검(평가 기준 11. 30.)
<table><tr><td>구 분</td><td colspan="2">총량시간 활용*</td><td>총량시간 배분**</td></tr><tr><td>실 적</td><td>0~103%</td><td>103% 초과</td><td>평균 70%≤12월 잔여시간 ≤평균 115%</td></tr><tr><td>점 수</td><td>10점</td><td>세부사항 별도</td><td>10점</td></tr></table>* 103% 초과(인사혁신처 협의 등 가용범위 내) 5% 마다 -0.5점
(예시: 105% 이내 요청 : 9.5점, 109% 요청 9점…)
** 12월 실적은 11월까지 사용한 평균 실적분으로 갈음, 해당범위 초과 시 -1점
※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는 부당수령 적발현황과 별개로 자체 감사 시 지적되는 등 부실 관리 적발 시 다음 연도 총량 배분에 감축 반영</td><td>20</td></tr>
<tr><td>근무혁신
이행 노력도</td><td>○ 근무혁신 이행 실적
① 주니어 보드 회의 또는 의견 청취(3회 이상) ② 리버스 멘토링 실시(3회 이상)
③ 유연근무 관리(공동근무시간, 출퇴근 지정 점검) ④ 정시퇴근 요일 표준인사시스템 등록 관리
⑤ 소통이벤트(3회 이상) ⑥ 점심·문화회식 운영(부서별 반기 1회 이상) ⑦ 칭찬문화 확산(2건 이상)
<table><tr><td>구 분</td><td>6개 이상 반영</td><td>4~5개 반영</td><td>4개 미만 반영</td></tr><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r></table></td><td>10</td></tr>
<tr><td>마음건강
자가진단 참여</td><td>○ 마음건강 자가진단 참여 실적 : 공무원 연금공단 누리집 재해보상포털 내 진단
- 지표산식 : 자가진단 참여 공무원 인원 / 공무원 현원 × 100%(평가 기준 11. 30.)
<table><tr><td>구 분</td><td>83.5% 이상</td><td>83.5% 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9</td></tr></table></td><td>10</td></tr>
</table>

⑮ 목표값 설정 기준	○ 목표값 설정기준 : 목표값 직접 설정 100
⑯ 점수 산출	등급(점수) / S등급(100) / A등급(92.5) / B등급(85.0) / C등급(77.5) 달성률 / 100점 이상 / 100점 미만 ~ 95점 이상 / 95점 미만 ~ 90점 이상 / 90점 미만
⑰ Data Source	○ e-사람표준인사시스템 〉 통계 〉 월별근무상황현황, 평균초과근무현황 - 모든 통계는 추출시점의 현 소속직원 기준

① 지표명 : 1-05.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적

② 주관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병무민원상담소장		
③ 전략목표	국민체감 병무행정으로 포용국가 조성 기여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국민체감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민원현황 분석 및 불만민원 해결을 통한 의무자 편익 증진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

⑬ 지표산식	민원처리 충실도(60점) + 민원처리 준수율(40점) + 가・감점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병무 민원서비스 제고 2. 지표산식 설명 ○ 대상 : '25. 9. 1. ~ '26. 8. 31. 기간 중 처리한 민원 ※ 지표산식 세부기준 : 붙임 참조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목표설정 기준값(유형) : 목표값 직접설정(90점)
⑯ 점수 산출	○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등급화 평가

등급(점수)	S등급(100점)	A등급(92.5점)	B등급(85점)	C등급(77.5점)	D등급(70점)
실적점수	90점이상	90점미만~85점이상	85점미만~80점이상	80점미만~75점이상	75점미만

⑰ Data Source	○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처리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적 지표산식

□ 평가항목별 비중

계	민원답변 충실도	민원처리 준수율	가/감점
100점	60점	40점	상한 10점 / 하한 없음

□ 평가 세부기준

○ 민원답변 충실도(60점) / 최초답변 + 추가답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합 계		60점
민원 요지 여부	ㅇ민원요지 양식을 준수한 경우 : 10점 ㅇ민원요지 양식을 지키지 않았으나 요지를 언급한 경우 : 8점 ㅇ민원요지를 파악할수 있을 정도로 언급한 경우 : 6점 ㅇ민원요지가 전혀 없는 경우 : 0점	10점
답변 적절성	**<민원사항 누락 여부>** ※ 배점범위(12점)에서 감점처리 ㅇ민원요지를 모두 답변한 경우 : 12점 ㅇ민원요지 중 1개 답변 누락 : 10점 / ㅇ 2개 답변 누락 : 8점 ㅇ 3개 이상 답변 누락 : 6점 / ㅇ모두 누락된 경우 : 0점	12점
	<답변 이해 용이 여부> ※ 배점범위(12점)에서 감점처리 ㅇ민원 처리근거(관련 법령 등) 제시 및 정확한 조치결과 안내 등으로 민원인이 이해하기가 용이한 경우 : 12점 ㅇ민원답변에 전문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추가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10점 ㅇ민원답변에 전문용어 사용,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8점 ㅇ민원답변내용이 불분명하고, 이해가 어려운 경우 : 6점	12점
	<성실한 답변 작성> ※ 배점범위(15점)에서 감점처리 ㅇ민원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한 경우(구체적인 해소방안 제시를 통한 이해와 설득 노력 등) : 15점 ㅇ민원 요청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응대한 경우 : 12점 ㅇ전화로 설명하였다는 내용만 기재 등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의 핵심이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 8점 ㅇ요청사항에 대한 안내 없이 강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 6점	15점
처리 담당자 정보 명시	ㅇ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정보(부서, 성명, 전화번호)를 민원 회신문에 모두 제공하였는지 여부 - 3가지 모두 안내 : 3점 / - 2가지 안내 : 2점 - 1가지 안내 : 1점 / - 안내 없음 : 0점	3점
추가답변 적절성	**<불만해소 노력 등>** ※ 배점범위(8점)에서 감점처리 ㅇ1차 답변과 동일여부, 불만해소를 위한 노력 여부 등 * '답변 이해 용이 여부', '성실한 답변 작성' 등 포함 평가	8점

* 청별 불만민원 10건(10건 미만시 전수) 추출, 내부 심사위원 구성 평가(1건 2인 심사위원 교차평가)
* 불만민원이 없는 기관은, 최초답변 건 기준으로 평가

○ 민원처리 준수율(40점)

항 목	세 부 기 준
① 불만민원 추가답변	최초 불만 응답 후 1개월 이내 실시(모민원) * 추가답변 기한 내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 신규 출원 시 추가답변 제외 *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처리예외) 해당하는 경우 추가답변 제외
② 회신방법 준수	서신 미회신 시, 민원인의 동의내역 구체적 기재
③ 기피신청 민원 처리방법 준수	부득이하게 수용이 어려운 기피신청 민원은 답변시 사유 안내 및 적정 코드 입력 * 자민원 포함, 취하민원 제외
④ 기간 연장처리 준수	2회 이상 연장처리 시 연장사유 및 민원인 사전 동의내역 구체적 기재
⑤ 이송·다부처지정 시간 준수	소속기관 민원 접수 시간부터 8근무시간 내 이송·다부처지정
⑥ 처리기간 준수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 자민원, 취하민원 포함

* 배점기준 : '미 준수 1회' 당 '0.5점 감점' (1일당 1회 계산) / 각 항목당 감점 상한선 5점 설정

○ 가/감점(상한 10점 /하한 없음)

<table>
<tr><th>구분</th><th>항 목</th><th>세 부 기 준</th><th>비고</th></tr>
<tr><td rowspan="7">가점</td><td>1인당
민원처리건수</td><td>• 2건(1.0점), 3건(1.5점), 4건 이상(2.0점)
* 민원처리건수 / N(2026. 8. 31. 기준 현원)
* 자민원·취하민원 제외, 병무민원상담소 미적용</td><td>상한 2점</td></tr>
<tr><td>민원불편사항
제도개선</td><td>•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요구 사항을 개선 건의(법, 지침 등), 본청 소관부서에서 채택된 경우 건당 0.5점 *국민신문고 민원요구 증빙자료 제출 (일반적인 공무원 제안 채택 건 불인정)
• 민원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하여 민원제도개선추진단 추진과제로 채택된 경우 건당 0.5점</td><td>상한 3점
(합산 최대)</td></tr>
<tr><td>불만민원
서비스닥터팀
회의 운영실적</td><td><table><tr><th>불만 \ 가점</th><th>2점</th><th>1점</th><th>0.5점</th></tr><tr><td>50건 이상</td><td>80%</td><td>70%</td><td>60%</td></tr><tr><td>11 ~ 49건</td><td>90%</td><td>80%</td><td>70%</td></tr><tr><td>10건 이하</td><td>100%</td><td>90%</td><td>80%</td></tr></table>* 회의결과를 반영, '26. 3 ~ 8월 중 추가답변한 건수
→ 회의당 민원 3건 초과 시 3건으로 인정
* 달성 기준 건수는 소수점 1의 자리에서 절상</td><td>상한 2점</td></tr>
<tr><td>민원 질의응답
(Q&A)
등록건수</td><td><table><tr><th>지방청</th><th>1.0점</th><th>0.5점</th></tr><tr><td>서울</td><td>8</td><td>6</td></tr><tr><td>부산,대구.경인,인천</td><td>5</td><td>4</td></tr><tr><td>광주,대전,경남,경기북부</td><td>4</td><td>3</td></tr><tr><td>강원,충북,전북,상담소</td><td>3</td><td>2</td></tr><tr><td>제주,영동</td><td>2</td><td>1</td></tr></table>* '26. 6. 30.까지 등록한 건수(공개설정 :~등록일로부터1년)
* 동일내용 반복 등록 시 미인정</td><td>상한 1점</td></tr>
<tr><td>우편 회신
e-그린우편 활용</td><td>• 우편회신 대상 민원 중 e-그린우편 활용 정도
- e-그린우편 활용률 95% 이상 달성 시 1.0점</td><td>상한 1점</td></tr>
<tr><td>상급자 결재 및
전자결재 연계</td><td>• 답변시 상급자 결재 및 온나라 전자결재 연계 활용 정도
- 전자결재 연계 처리율 95% 이상 달성 시 1.0점</td><td>상한 1점</td></tr>
<tr><td rowspan="2">감점</td><td>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td><td>• 민원처리법 제34조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 시행령 제38조의2 의거, 연1회 이상 의무개최
※ 반복민원 및 해소·방지 대책 등에 대한 심의
* 서면회의도 인정</td><td>1점</td></tr>
<tr><td>민원처리
부적정</td><td>• 만족도 점수 요구, 취하 요청 등으로 민원 야기
- 1회당 -3점</td><td>하한없음</td></tr>
</table>

① 지표명 : 2-01. 병역판정검사 수검률

② 주관부서	병역판정검사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	⑦ 지표유형	계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종
④ 성과목표	정확한 병역처분과 자원관리로 병역이행의 신뢰성을 높임	⑧ 평가/관리	평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적기 의무부과 및 미수검자 발생 방지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

⑬ 지표산식	수검인원 / 목표인원 × 100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각 지방청의「병역판정검사 수검률」을 측정함으로써 미수검자 적기 수검유도 및 원활한 종결 업무 추진 2. 지표산식 설명 ○ 수검인원(자원관리청 기준) : '26. 11. 30.까지 최초 수검자(19세, 19세 모집수검자 및 처분보류자 포함) * 제외 : 별도 수검자, 18세 모집병,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 타청에서 검사받은 인원 포함, 타청 자원으로 자청에서 검사한 인원 제외 ○ 목표인원 : 소속기관별 목표 인원

구 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인 원	35,039	16,601	19,128	33,768	13,903	16,974	3,969	6,913	7,583	13,608	2,929	23,662	15,485	2,079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목표값 설정 기준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조사 결과, 청별 검사 진행률 등 고려하여 설정 * 청별 목표인원(12월말기준) x 청별 적용률** x 20세검사후입영자 제외 비율(97.6%) ** 청별 적용률 = 청별 검사진행률(11월말기준 수검일*100/총수검일)x일반적령자비율(95%) ※ 강원·충북·전북·제주·강원영동은 11월말 기준 검사진행률이 100%이므로 청별 적용률이 일괄 95%가 되나, 수검인원 규모 고려 청별 적용률 90% 적용

① 지표명 : 2-01. 병역판정검사 수검률

⑯ 점수 산출

○ 달성률 구간 설정

등 급	S (100점)	A (92.5점)	B (85.0점)	C (77.5점)	D(70.0점)
달성률 구간(%)	**100.0 이상**	100.0 미만 98.5 이상	98.5 미만 97.0 이상	97.0 미만 95.0 이상	95.0 미만

○ 병역판정검사 성과향상 노력에 대한 수검률 추가 인정

※ 수검률 100.0% 미만인 경우 아래의 각 항목에 따라 수검률 추가 인정(100.0% 이상인 경우 계상하지 않음)
※ 지방청 제출 실적은 '26. 11. 30.까지 제출한 현황에 한함, 미제출 시 반영 제외

(1)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홍보 실적

평가항목	세부내용	점수(최대)
언론홍보	· 언론기고 및 보도자료 배포 실적 - 지방청장, 외부위원(정책자문위원 등) 기고·인터뷰 1건당 2점 - 일반보도(인터넷 언론 포함) 건당 1점 * 동일내용 다매체 중복배포 시 1건으로 간주 * 언론홍보 활동은 매체에 게재된 것에 한함	10점
온라인·미디어 홍보	· SNS, 블로그, 기타 미디어 활용 홍보 실적 - 누리집, SNS 등 홍보 1건당 2점 - 영상, 카드뉴스, 인스타툰 등 자체 컨텐츠 제작·홍보 1건당 5점 - 관할 대학·직업훈련기관 등 연계 학사포털, SNS 게시 1건당 3점 * 동일내용 SNS 다매체 중복배포 시 1건으로 간주	25점
대면·현장홍보	· 학교·진로설계센터 등 현장설명 - 관할 대학·직업훈련기관·지하철 등 현장 설명회 1건당 3점	15점

※ 상반기 홍보 시 가점 부여(건당 +2점)

* 수검률 추가 인정(+)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홍보 실적	45점 이상	44~35점	35점 미만
수검률 추가 인정(+)	0.2%	0.1%	0.05%

⑰ Data Source

병무행정통계시스템, 소속기관 현황 보고('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홍보 실적)

① 지표명 : 2-02. 병역면탈 단속 및 예방 실적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② 주관부서	병역조사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 + 가감점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을 통한 병역면탈 발생 근절
2. 지표산식 설명

《광역청》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광역수사청 (서울청, 대구경북청, 경인청)	송치인원 (40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24명	23명	22명	21명	20명 이하
	기 소 율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80% 이상	79 ~ 70%	69 ~ 60%	59 ~ 50%	49% 이하
	기피자 송치실적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75% 이상	74 ~ 65%	64 ~ 55%	54 ~ 45%	44% 이하
	병역면탈 예방활동 (30점)	구 분			횟수별	최대30점
		병역면탈 예방활동 계획 수립(4월이전)			5점	-
		병역면탈 예방활동 실적 분석(2분기, 3분기)			5점	분기별 2.5점
		병역면탈 예방·단속관련 언론보도			5점	분야별 최대 10점
		병역면탈 예방·신고 유관기관 홍보			2.5점	

* 송치인원 : '25.12.1.~'26.11.30. 기간 중 송치, 광역수사청 실적에 소속 현장청 실적 합산, 불기소의견 송치 포함
* 병역면탈 기소율 : (기소 + 기소유예) / 송치인원(검찰수사 중 인원 및 불기소의견 송치인원제외), 소숫점 절상
* 기피자 송치실적(%) = (병역기피자 송치인원 ÷ 병역기피자 수사의뢰 접수인원) × 100/ 평가기간 : '25.12.1.~ '26.11.30.
* 병역기피자 송치인원은 접수 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기간 중 송치한 인원
* 병역면탈 예방활동 : 분기별 실적 제출 시 인정(계획수립·분석·결과보고 및 증빙사진, 과장 이상 결재)

① 지표명 : 2-02. 병역면탈 단속 및 예방 실적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현장청》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현장 단속청	수사의뢰 (20점)	구 분	20점	19점	18점	17점	
		부산, 전남, 충남, 경남, 인천, 경기북부	4명 이상	3명	2명	1명 이하	
		강원, 충북, 전북	2명 이상	1명	0명		
		제주, 강원영동	1명 이상	-	0명		
	직접수사/ 광역청 공조수사 (20점)	구 분	20점	19점	18점		
		부산, 전남, 충남, 경남, 인천, 경기북부	3명 이상	2~1명	0명		
		강원, 충북, 전북	2명 이상	1명	0명		
		제주, 강원영동	1명 이상	-	0명		
	기피자 송치실적 (20점)	구 분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부산, 전남, 충남, 경남,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75% 이상	74 ~ 65%	64 ~ 55%	54 ~ 45%	44% 이하
		제주, 강원영동	80%이상	79 ~ 70%	69% 이하		
	병역면탈 예방활동 (40점)	구 분	횟수별	최대40점			
		특사경 제복착용, 검사장 예방활동	활동횟수가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월4회 이상인 경우 10점, 미만인 경우 8점				
		병역면탈 예방활동 계획 수립(4월이전)	5점	-			
		병역면탈 예방활동 실적 분석(2분기, 3분기)	5점	분기별 2.5점			
		병역면탈 예방·단속관련 언론보도	5점	분야별 최대 10점			
		병역면탈 예방·신고 유관기관 홍보	2.5점				

* 수사의뢰 : 광역청 확인(협의) 후 수사의뢰 건에 한하여 인정
* 직접수사 : 현장청 자체 수사 후 직접 검찰 송치 시 인정
* 공조수사 : 참고인 직접 조사, 피의자 신문 참여(기명날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또는 현장탐문 참여
* 기피자 송치실적(%) = (병역기피자 송치인원 ÷ 병역기피자 수사의뢰 접수인원) × 100/ 평가기간 : '25.12.1.~ '26.11.30.
* 병역기피자 송치인원은 접수 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기간 중 송치한 인원
* 병역면탈 예방활동 : 분기별 실적 제출 시 인정(계획수립·분석·결과보고 및 증빙사진, 과장 이상 결재)

① 지표명 : 2-02. 병역면탈 단속 및 예방 실적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 가·감점 부여 항목 및 점수(가·감점 최대 10점)

가·감점 항목		내 용	점수	비고
광역 수사청	상반기 초과 송치실적	병역면탈 송치인원(24명) 기준 상반기 실적이 50% 초과시 (불기소의견 송치 포함)	1명당 1점	최대 3점
	수사 난이도	공범, 신종면탈수법, 병적별도관리자, 유명인 등 적발	1건당 2점	최대 4점
	내사착수 여부 결정 지연	현장청 수사의뢰 이후 4개월 이내 내사착수여부 미결정 ('25년 이전 의뢰사건은 '26년 4월이전 내사착수 여부 미결정시)	1명당 -0.2점	제한없음
현장 단속청	초과 수사(직접,공조) 실적	직접수사/광역청 공조수사 초과 실적	1명당 1점	최대3점
	현장범 적발	현장 증거채증·압수·촬영, 피의자진술 확보 후 송치	1명당 1점	제한없음
공통	병역면탈 의심자 현장면담	병역판정검사 중 병역면탈 의심자 현장면담	1명당 0.2점	최대 1점
	특사경 활동 미담(우수)사례	병역면탈 예방·단속 관련 미담(우수)사례(언론보도 등)	건당 1점	최대 2점
	병역면탈 예방 제도개선 제안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제안채택	건당 1점	최대 3점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활용 수사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활용, 데이터 분석 및 면탈의심자 착안수사(자체수사) * 현장청은 수사의뢰건 포함	건당 1점	최대 3점
	수사 시 인권 관련 물의 야기	수사 시 비인격적 대우 등 인권침해 관련 물의 야기	건당 -1점	제한없음
	내사종결 실적	내사종결 실적	1명당 0.2점	최대 3점
	확인신체검사 실적	확인신체검사 실시 인원	1명당 0.2점	최대 2점
	기피자 초과 송치실적	기피자 송치실적 초과 달성 비율(5% 단위로 평가)	5%당 0.5점	최대 1점

* 광역청 송치인원 : 자체 송치인원 + 소속 현장청 수사공조 인원(현장청에서 송치완료 건)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목표설정 기준값 유형 : 기타(목표값 100점)

⑯ 점수 산출

등급(점수)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	C등급(77.5)	D등급(70)
달성률	100% 이상	100%미만~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5%이상	85%미만

⑰ Data Source

○ 지방청별 수사실적 등 관련 현황 및 증빙자료 등 종합

① 지표명 : 2-03. 정보보호 이행실적

★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평가) 연계

② 주관부서	정보보호팀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소속기관장		
③ 전략목표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정확한 병역처분과 자원관리로 병역의무의 신뢰성 제고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병역자료의 완벽한 정보보호체계 유지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실태평가(70점) + 정보보호사고(10점) + 사이버 대응 훈련(10점) + 정보보호 학습의 날(10점) + 가점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지능화된 사이버 보안위협으로부터 병역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안활동 수행으로 병역자료의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 유지 2. 지표산식 설명 ○ 실태평가 : 70점 만점(정보보안 35점 + 개인정보보호 35점) * 허위증빙시 가중감점 ○ 정보보호 사고 : 10점 만점 * 보안사고(개인정보 포함) 발생시 : 건당 2점 감점(최대 4점 감점) 예) 언론보도, 외부기관 감사지적, 개보위·KISA등 신고접수 * 국정원 통보 보안위협 발생 및 사이버안전센터 보안지적 시 : 건당 0.5점(최대 6점 감점) 예) 국정원 실태평가 및 사이버안전센터 보안위협 탐지 등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한 사례 발생 시 ○ 사이버 대응 훈련 : 10점 만점(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5점 + 해킹메일 대응 훈련 5점) *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 훈련결과에 따른 소속기관별 등급 및 점수부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 수	5점	4.5점	4점

* 해킹메일 대응 훈련 : 5점 - (해킹메일 미조치 건수 × 0.5점)

① 지표명 : 2-03. 정보보호 이행실적

★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평가) 연계

○ 정보보호 학습의 날 실적 : 10점 만점(정보보안 5점 + 개인정보보호 5점)

* 현원(부재인원 제외)대비 50점이상자 비율(불참자는 0점처리)을 분기별 계산후 4분기 평균값으로 최종산정
* 분야별 기준: 85%이상(5점), 80%~84.99%(4.5점), 75%~79.99%(4점), 74.99%이하(3.5점)

○ (가점) 정보보호 우수사례 : 정보보호활동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경우(건별 0.5~1점, 최대 1점)

⑮ 목표값 설정 기준

○ 목표설정 기준값(유형) : 목표값 직접 설정(94.3점)

- (참고) 최근 3년 실적

구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북부	강원영동	중검소	상담소	연수센터	대체위
'25년	**95.37**	**99.63**	**97.98**	**98.05**	**96.34**	**95.84**	**99.21**	**98.93**	**97.67**	**99.60**	**98.97**	**96.44**	**97.64**	**97.52**	**96.04**	**95.66**	**96.04**	**97.27**
'24년	94.87	100.07	99.68	99.65	97.58	96.97	99.59	98.78	99.53	98.25	97.28	96.60	97.16	96.39	98.94	96.07	96.12	96.76
'23년	96.32	95.9	97.37	93.37	98.5	97.9	96.67	97.35	97.98	98.05	97.85	97.35	94.6	96.67	97.4	96.15	96.24	96.22

※ 소속기관 자체 정보보호활동에 중점을 두어 실태평가 배점을 상향

⑯ 점수 산출

등급(점수)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	C등급(77.5)	D등급(70.0)
달성률	100%이상	100%미만~96%이상	96%미만~92%이상	92%미만~88%이상	88%미만

⑰ Data Source

○ 정보보호 실태평가, 훈련 등 관련 근거자료 및 공문 등

① 지표명 : 2-04. 병역자원 품질관리

② 주관부서	데이터관리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정확한 병역처분과 자원관리로 병역의무의 신뢰성 제고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자료관리 정확성 유지, 업무규칙 발굴 및 개선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

⑬ 지표산식	(병역자원 정제 처리율 × 0.6) + (업무규칙 발굴률 × 0.4)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오류자료 정비, 업무규칙 발굴 등 병역자원 품질관리 제고 2. 지표산식 설명 ○ 병역자원 정제 처리율 : (병역자원 정제 처리 건수/병역자원 정제대상 총 건수) × 100 ※ 미처리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오류아님, 정비불가 등) 시 예외 처리 ○ 업무규칙 발굴률 : (업무규칙 발굴 건수 / 병역자원 관리부서 수) × 100 (최대 100%) - 업무규칙 발굴 건수 : (업무규칙 신규, 개선 건) + (데이터 오류발생원인 파악 건 * 2) + (업무규칙 폐기, 통합 건) - 오류발생원인 파악 건 : 응용프로그램, 업무처리 절차 등 오류발생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무규칙은 신규 발굴 건에서 제외, 개방/품질 담당 검토 후 적용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목표설정 기준 : 목표값 직접 설정 100
⑯ 점수 산출	

등급(점수)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0)	C등급(77.5)	D등급(70.0)
달성률	100%이상	100%미만~98%이상	98%미만~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

⑰ Data Source	○ 병역자원 정제 처리 대상 및 결과 : 병무감사시스템 활용 ○ 업무규칙 : SR을 통해 보고

① 지표명 : 3-01. 현역병 충원실적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② 주관부서	현역입영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적기 · 적정한 병력충원과 안보 지원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병역자원의 적기·적정 충원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지방청별 충원실적 관리로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입영인원 / 목표 입영인원) × 100 - 감점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현역병 군 소요의 적기 · 적정 충원을 통하여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 2. 지표산식 설명 ○ '26년 군소요*(184,127명) 대비 충원 **목표값**** 167,464명(91.0%) 기준 * '26.11.30.기준(평가산출고려) ** '26.12월 예상 충원율 고려, '26년 목표 충원율(88.7%) 달성을 위해 필요한 1~11월 충원율 ○ 목표인원: {('23~'25년 전국대비 지방청별 징·모집 입영비중×목표값×70%)+('26년 연초 전국대비 지방청별 자원비중×목표값×30%)} * 연초 자원 산정시 국외입영연기자 제외, 모집 입영인원은 응시 지방청 기준 ○ 입영인원: 1~11월 입영인원+10월~11월 징집병 입영인원 가중치 부여(10%)+12월 모집병 입영대상자(최종합격자) * '26.11.30.기준 실적 산출, 모집 입영인원은 응시 지방청 기준 ○ 지방청별 목표인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인원	167,464	33,209	13,713	15,507	23,704	10,568	13,702	3,033	4,848	5,758	9,425	2,177	18,007	12,136	1,677

○ 실적산출

달성률구간	100% 이상	100% 미만~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85% 이상	85%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① 지표명 : 3-01. 현역병 충원실적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 감점 기준

- 현역(징집)병 인도예측률

※ 세부기준

① 산식 : (현역병 인도예측 인원* 중 인도인원 / 현역병 인도예측 인원**) × 100

* 입영일 2주 전 인도예측 명부 인원 전체 ** '입영가능'으로 인도예측한 인원

② 지방청에서 입영일 기준 2주전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한 인원 기준

* **'인도예측률 보고 이후 통지한 인원, 입영판정검사 수검 결과 처분보류자·병역처분변경자'**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입영일 기준 2주전 입영예측 기준 : 입영일 기준 전전주 월·화까지 입영예측 한 현황

③ 병무행정시스템 "입영자 연명부 → 입영예측"을 통해 실적 산출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지방청	서울, 경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경기북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강원영동
기준 횟수	7회	5회	3회	1회

* 인도예측률 **대비 110%초과 또는 90%미만(대상 : 인도인원 30명 이상)** 기준 횟수 **초과 시 1점 감점**

* 2025년 입영일자 중 인도인원 30명이상으로 평가대상 된 횟수 기준 그룹화

⑮ 목표값 설정 기준

○ 목표설정 기준값(유형) : 100%(목표값 직접 설정)

⑯ 점수 산출

○ 점수산출 = 실적산출 + 감점

등급(점수)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	C등급(77.5)	D등급(70)
점수	100이상	100 미만~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85 이상	85미만

⑰ Data Source

○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병무행정 통계시스템

① 지표명 : 3-02.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실적

② **주관부서**	현역기획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최적의 병력충원과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로 튼튼한 안보 지원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적정 충원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진로와 병역을 연계한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병역진로설계 유관기관 협업실적(50점) + 취업맞춤특기병 운영실적(50점)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청년 미래설계 지원을 위한 기관 협업 및 경력 연계로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도모 2. 지표산식 설명 ① **병역진로설계 기관협업 실적** : 각 군 협업 노력(20점) + 대학(비)교과과정 연계(20점) + 상담직원 역량강화교육 이수실적(10점) + 가점(2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각 군 협업 노력 (20점)	구분	20점	19점	18점
	서울, 부산, 대구, 경인, 전남, 충남, 인천	12회 이상	10~11회	9회 이하
	경기북부, 경남	10회 이상	8~9회	7회 이하
	강원, (울산센터) 전북, 충북, 제주, 강원영동	3회 이상	2회	1회 이하

① 지표명 : 3-02.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대학 (비)교과과정 연계 실적 (20점)	구분	20점	19점	18점
	서울, 부산, 대구, 경인, 전남, 충남, 인천, 경기북부, 경남, 강원	교과 1건 또는 비교과 2건	비교과 1건	0건
	전북, 충북	교과 또는 비교과 1건	대학병역이행 설명회 1건	
	제주, 강원영동	(비)교과 1건 또는 대학병역이행설명회 2건		
상담직원의 역량강화교육 이수 실적 (10점)	구분	10점	9점	8점
	서울	10회 이상	8~9회	7회 이하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인천	8회 이상	6~7회	5회 이하
	울산, 창원, 의정부	6회 이상	4~5회	3회 이하
	춘천	4회 이상	2~3회	1회 이하
	전북, 충북, 제주, 강원영동	2회 이상	1회 이하	-

① 각 군 협업 노력 : 모병관 협업 병역진로설계(병역이행설명회) 실적

- 부산청은 부산센터, 울산센터 평가기준 모두 적용
- 박람회, 지역축제 제외

② 대학 (비)교과과정 연계 실적

- 교과과정 : 학기별 수업과목(학점인정)에 병역진로설계 반영
- 비교과과정 ┌ 교과 외 학교제도(장학금지급기준, 졸업요건 등)에 병역진로설계 연계 반영
  * 반영한 해당연도에 1건으로 인정
  └ 20점 기준의 비교과 2건 중 1건은 대학 병역이행설명회 실시로 가능

* 동일한 날짜/장소는 1개 항목에서만 인정

① 지표명 : 3-02.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실적

③ 상담직원의 역량강화교육 이수 실적 : 직무 또는 현장교육 이수 실적

- 목표횟수 산출 : 상담직원수 × 2회 (직무/현장교육)

  단, 센터 미운영청(전북·충북·제주·강원영동)은 상담직원수 × 1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창원	의정부	춘천	전북	충북	제주	강원영동
상담직원(명)	5	4	4	4	4	4	4	3	3	3	2	2	2	2	2

* (11개센터) 센터 직원, (전북·충북·제주·강원영동) 모집담당 직원

④ 가점 항목(최대 2점)

항목	2점	1점
각 군 협업 노력	20점 평가기준의 150% 이상	20점 평가기준의 130% 이상 ~ 150% 미만

② 취업맞춤특기병 운영실적 : 지원율(40점) + 중도취소율(9점) + 홍보활동(1점)

○ 지원율(목표대비 실적) : 지방청 지원인원 ÷ 지방청 목표인원 × 100

지원율	100%이상	100%미만~95%이상	95%미만~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 지원인원 : 모집인원 중 지원확인서 발급인원, 중복접수 제외

* 목표인원

목표값(명)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4,000	828	285	343	722	197	311	65	107	118	203	48	467	275	31

① 지표명 : 3-02.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실적

<table>
<tr><td></td><td>○ 취소율 : 당해연도 취소인원 ÷ 당해연도 지원인원 × 100
<table>
<tr><td>포기율</td><td>20%미만</td><td>20%이상~21%미만</td><td>21%이상~22%미만</td><td>22%이상~23%미만</td><td>23%이상</td></tr>
<tr><td>점수</td><td>9</td><td>8</td><td>7</td><td>6</td><td>5</td></tr>
</table>
* 취소율은 최근 2년간 평균 21.0% 보다 낮은 20%를 기준으로 설정
○ 홍보활동 : 언론홍보 실적
<table>
<tr><td>항목</td><td>① 취업 성공사례</td><td>② 제도 홍보</td></tr>
<tr><td>점수(최대1점)</td><td>1회 1점</td><td>1회 0.5점</td></tr>
</table></td></tr>
<tr><td>⑮ 목표값 설정 기 준</td><td>○ 목표설정 기준값(유형) : 목표값 직접 부여(100점)</td></tr>
<tr><td>⑯ 점수 산출</td><td>
<table>
<tr><td>등급(점수)</td><td>S등급(100)</td><td>A등급(92.5)</td><td>B등급(85)</td><td>C등급(77.5)</td><td>D등급(70)</td></tr>
<tr><td>취득점수</td><td>100점 이상</td><td>99~97점</td><td>96~94점</td><td>93~91점</td><td>90점 이하</td></tr>
</table></td></tr>
<tr><td>⑰ Data Source</td><td>○ 병역진로설계 유관기관 협업실적, 취업맞춤특기병 운영현황</td></tr>
</table>

① 지표명 : 3-03. 병력동원훈련소집 충원율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② 주관부서	동원관리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적기·적정 병력충원과 병역이행자 맞춤 입영서비스로 튼튼한 안보 지원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누적 최종
④ 성과목표	병역자원 적기·적정 충원 및 예비전력 정예화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각 지방청별 실적(분기별) 관리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

⑬ 지표산식	병력동원훈련소집 충원율*(100점) + 나라사랑 가게 선정 가점(~2점) * (병력동원훈련소집 응소인원 / 계획인원) × 100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신속한 대체지정, 적기 입영안내, 정확한 연기심사 등을 통한 내실 있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실시로 유사시 병역자원의 적기·적정 충원 보장 2. 지표산식 설명 ○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인원 : 지방청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인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응소인원 : 지방청별 병력동원훈련소집 인도인원 ○ 나라사랑 가게 선정 : 지방청별 나라사랑 가게 선정 업체수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목표설정 기준값(유형) : 목표값 직접 설정 - 지방청별 훈련대상인원, 최근 3년('23, '24, '25년) 평균 유고율 등 고려, 계획인원 산정

① 지표명 : 3-03. 병력동원훈련소집 충원율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26년 계획인원 >

지방청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목표값	66,127	19,827	25,663	34,670	15,102	22,355	5,687
지방청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목표값	9,111	8,616	14,605	1,552	39,237	18,654	2,890

* 실적 인정 기준일(11.30.) 고려, 연간 계획인원에서 12월에 훈련을 실시하는 부대의 계획인원을 제외

⑯ 점수 산출

○ 충원율 점수

점수	100점	99점	98점	97점	96점
충원율	100%이상	100%미만~98%이상	98%미만~96%이상	96%미만~94%이상	94%미만

* '26. 1. 1. ~ 11. 30. 응소인원 기준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나라사랑 가게 선정 가점

점수 \ 지방청	서울	경인/인천/경북	부산/전남/충남/경남/북부	강원/충북/전북	제주/영동
1점	35개 이상	30개 이상	25개 이상	20개 이상	15개 이상
2점	가점 1점 기준 업체수의 170% 이상 선정 시(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6. 1. 1. 이후 선정되어 11.30. 기준 선정이 유지되고 있는 업체수

○ '26년 목표값 달성률

등급(점수)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	C등급(77.5)	D등급(70)
실적점수	100점 이상	100점 미만~99점 이상	99점 미만~98점 이상	98점 미만~97점 이상	97점 미만

⑰ Data Source

○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활용 실적 산출, 지방청 보고

① 지표명 : 3-04.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

② 주관부서	동원관리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적기·적정 병력충원과 병역이행자 맞춤 입영서비스로 튼튼한 안보 지원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종
④ 성과목표	병역자원 적기·적정 충원 및 예비전력 정예화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각 지방청별 실적(분기별) 관리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

⑬ 지표산식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종합)*(40점)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집합)**(60점)+가점(~2점)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인원 / 계획인원) × 100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중 집합교육 이수인원 / 집합교육 계획인원) × 100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통지서 교부, 입영 독려, 기피자 단속 지원 등 지자체 병무담당의 전시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군 전투력 향상 및 병역자원 적기·적정 충원 보장 2. 지표산식 설명 ○ 계획인원 : 지방청별 전시업무교육 계획인원 * (종합) 병무담당 정원 * (집합) 집합교육 계획인원 ○ 이수인원 : 지방청별 전시업무교육 이수인원 * (종합) 집합+온라인교육 이수인원 * (집합) 집합교육 이수인원 3. 산출방식 : 항목별 점수의 합 + 가점

① 지표명 : 3-04.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

○ 항목별 점수(전시업무교육 이수율)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 (종합)	○ 산식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인원 / 계획인원) × 100	40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 (집합)	○ 산식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인원 / 계획인원) × 100	60

지방청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계획인원	1,537	1,005	1,735	1,122	1,461	1,160	467
지방청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계획인원	575	875	1,101	155	929	605	280

이수율	100%이상	100%미만~98%이상	98%미만~96%이상	96%미만~94%이상	94%미만
실적점수	40	38	36	34	30

지방청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계획인원	1,153	754	1,301	842	1,096	870	350
지방청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계획인원	431	656	826	116	695	454	210

이수율	97%이상	97%미만~95%이상	95%미만~93%이상	93%미만~90%이상	90%미만
실적점수	60	58	56	54	50

* 집합·온라인교육 중복 이수 시, 온라인교육 이수 실적에서 제외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현장체험교육은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해 집합교육 실적으로 인정(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가점(최대 2점) : 현장체험교육 및 전시업무교육 우수사례 홍보 활동 등

* 집합교육 계획인원 대비 10% 초과 이수 시 가점 1점

* 지자체 병무담당의 전시업무교육 및 현장체험교육 관련 언론보도 0.5점

* 일반적인 교육(행사) 소개가 아닌 전시업무교육 우수사례(교육생 및 지자체) 보도 등 1점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이수율

- 계획인원 : 지방청별 지자체 병무담당 정원('26. 1. 1. 기준) 반영

⑯ 점수 산출

○ '26년 목표값 달성률

등급(점수)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	C등급(77.5)	D등급(70)
실적점수	100점	100점미만~96점이상	96점미만~92점이상	92점미만~88점이상	88점미만

⑰ Data Source

○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활용 실적 산출

① 지표명 : 3-05.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자원관리

② 주관부서	국외자원관리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최적의 병력충원과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로 튼튼한 안보 지원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최적의 병역자원을 적기·적정 충원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국외여행허가 시 국내·외 가족 연락처 확보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 (최종 값은 100점을 넘지 아니함)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자원관리로 공정한 병역의무부과 2. 지표산식 설명

평가 항목	산 식	배점
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감소 노력 ('25.12월~'26.11월)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귀국독려활동 체크리스트 누락(건당 -0.5점)	30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연락처 미확보(허가 접수 시) (건당 -0.5점/허가청)	30
②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고발 관리	- 고발 및 고발취소 인원 관리 : 고발 15일 초과 지연 및 고발(취소) 보고 5일 초과 지연 발생인원 * 주말제외, 문서 발송일 기준 ** 측정산식 : 고발 및 보고 지연 인원 ÷ 당해연도 미귀국인원 × 그룹별 가중치 (소숫점 셋째자리 산출값 반영, 넷째자리 절사)	30
	- 입국자에 대한 후속조치 소홀 : 관할 수사기관 통보 지연 8일 이상(건당 -0.5점) * 주말제외, 문서 발송일 기준	10

① 지표명 : 3-05.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자원관리

③ 가 점	- 국외자원관리 제도 관련 언론 등 홍보활동(반기 1점, 연 2점 상한) : 기고문(건당 0.5점), 기획보도(건당 1점), 일반보도(건당 0.5점)	2
④ 감 점	- 국외관련업무 처리과정 중 부정적 언론보도, 민원 소홀 사례 등 발생 * 직원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로써 사안의 경중 또는 빈도에 따라 감점	-2 ~ -0.5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취소)된 후에도 귀국하지 않은 사람
(단, 11. 30. 기준 당해 연도 귀국자, 고발 취소자, 국적상실자, 사망자는 ① 평가대상에서 제외)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목표값 직접 설정(100점)

- 최근 5년 지방청별 평균 미귀국 인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경남	경기북부	강원영동	인천
인원	65	10	12	27	8	12	5	4	4	3	4	16	1	20

* 미귀국 인원 평균 20명 이상 A그룹 : 서울, 경인, 인천
미귀국 인원 평균 20명 미만~10명 이상 B그룹 : 부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경기북부
미귀국 인원 평균 10명 미만 C그룹 :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경남, 강원영동
* 그룹별 가중치

구 분	A그룹	B그룹	C그룹
가중치(%)	0.5	1.0	1.5

- 산출값이 큰 순서로 나열하여 하위 40% -2점, 중위 30% -1점, 상위 30% -0.5점 부여, 산출값이 동점일 경우 A > B > C 그룹 순서로 선순위, 동일 그룹 내 동점일 경우 5년 평균 미귀국 인원 많은 청 선순위
* 관리지연 미발생 시 감점없음

⑯ 점수 산출

○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최종 값은 100점을 넘지 아니함)

⑰ Data Source

○ 지방청 보고 자료(서식 및 증빙 제출),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활용

지표명 : 4-01.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② 주관부서	사회복무정책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보충역제도 효율적 운영 및 국민체감 병무행정으로 포용국가 조성 기여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적정 유지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26년도 적정 배정 목표인원 달성률(50%) + '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률(50%)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보충역 자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당해 및 차후년도 배정 적정 유지

2. 지표산식 설명

○ 주기 : 평가 당해 연도 1. 1.~ 11. 30.

○ **'26년도 적정 배정 목표인원 달성률(50%) + '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률(50%)**

- **'26년도 적정 배정 목표인원** : '26년 최초 배정인원 + 추가 배정인원 - 배정 반납인원

< '26년도 지방청별 배정 목표인원 및 산출근거 >

<'25.12.31.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목표값	**22,453**	**3,481**	**1,899**	**2,161**	**3,351**	**1,707**	**1,781**	**457**	**820**	**907**	**1,272**	**327**	**2,224**	**1,840**	**226**
최초 배정	22,235	3,266	1,995	2,167	3,315	1,739	1,788	467	820	900	1,179	327	2,206	1,840	226
추가 배정	1,485	298	141	85	301	53	78	3	15	21	116	4	296	74	0
배정 반납	1,267	83	237	91	265	85	85	13	15	14	23	4	278	74	0

- **'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목표인원** : 지방(지)청 소집자원 규모(A~F그룹)별 목표값 적용(최근 3년간 배정 평균값 100%, 95%, 90%, 85%, 80%, 75%)

지표명 : 4-01.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 '27년도 지방(지)청별 배정 목표인원 및 최근 3년간 배정인원 >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목표값	**23,346**	**3,849**	**1,828**	**2,101**	**3,727**	**1,488**	**1,892**	**425**	**766**	**873**	**1,325**	**334**	**2,620**	**1,910**	**208**
'26년 배정	22,235	3,266	1,995	2,167	3,315	1,739	1,788	467	820	900	1,179	327	2,206	1,840	226
'25년 배정	25,522	3,705	2,139	2,492	3,904	1,934	1,893	565	945	1,040	1,515	381	2,685	2,060	264
'24년 배정	28,521	4,576	2,320	2,757	3,963	2,280	2,296	562	1,106	1,141	1,722	404	2,970	2,134	290
자원규모		A (376.9)	D (183.8)	D (192.6)	A (248.4)	F (157.6)	B (231.4)	E (165.5)	E (165.4)	D (188.1)	C (213.5)	C (209.5)	A (280.8)	B (220.2)	E (164.1)

* '27년도 사회복무요원 자원규모 : A그룹 ~ F그룹 6단계 분류
- A그룹(3개) : '26년 배정인원 대비 소집자원율 240% 이상(서울, 경인, 인천), 100% 반영
- B그룹(2개) : '26년 배정인원 대비 소집자원율 220% 이상 ~ 240% 미만(충남, 북부), 95% 반영
- C그룹(2개) : '26년 배정인원 대비 소집자원율 200% 이상 ~ 220% 미만(경남, 제주), 90% 반영
- D그룹(3개) : '26년 배정인원 대비 소집자원율 180% 이상 ~ 200% 미만(부산, 경북, 전북), 85% 반영
- E그룹(3개) : '26년 배정인원 대비 소집자원율 160% 이상 ~ 180% 미만(강원, 충북, 영동), 80% 반영
- F그룹(1개) : '26년 배정인원 대비 소집자원율 160% 미만(전남), 75% 반영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26년도 적정 배정 목표인원 달성률**

- 배정 목표인원 달성률 : ('26년 적정 배정 목표인원 + 추가 배정인원 - 배정 반납인원)/'26년 적정 배정 목표인원 × 100

  * 배정인원(실적) : '26 1. 1. ~ 11. 30.까지 「 '26년도 추가 배정 및 배정 반납한 인원」 실적 반영.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2】의 제재사유로 배정취소한 인원은 반납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 **'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 배정 목표인원 달성률 : ('27년도 배정인원/'27년도 배정 목표인원) × 100 + 가산율(%)

  * 배정인원(실적) : '26 1. 1. ~ 11. 30.까지 「'27년도 추가 배정 및 배정 반납한 인원」 실적 반영.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2】의 제재사유로 배정취소한 인원은 반납인원에 미포함

지표명 : 4-01.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가산 부여항목 및 가산율(12.5%) : ① 사회서비스분야 배정률(5%) + ② 수요확대 노력도(7.5%)】

① '27년도 사회서비스분야 배정률이 전년('26년도) 대비 초과한 지방청은 5% 부여. 다만, 전년('26년도) 사회서비스분야 배정률이 80% 이상인 지방청은 '27년도 80% 초과시 5% 부여

< '26년도 소속기관별 사회서비스분야 배정률 >

구 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사회서비스 배정률(%)	80.4	76.0	81.0	79.6	77.6	75.6	89.7	80.4	77.6	74.2	92.0	72.3	82.0	88.9

* 사회서비스분야 배정률(%) : (사회서비스분야 배정인원 / 총 배정인원) × 100

②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노력도(최대 7.5%)

- 방문 횟수 및 지방(지)청장 주관 방문

구분	1.0%	2.0%	3.0%	4.0%	5.0%
방문 횟수(A)	3-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지방(지)청장 주관(B)	3회	4회	5회		6회 이상

* 횟수 : 지방청장 주관 복무기관 방문, 부서장급 이상 기관장 등 면담, 복무기관 간담(설명)회
* A와 B 조건 모두 충족 시 해당 가산율 부여(예시: 방문 21회 + 지방청장 주관 4회 ⇒ 2.0%)

- 전년('25년 4월 기준) '26년도 배정인원 대비 증가율

구분	0.5%	1.0%	1.5%	2.0%	2.5%
증가율	5% 미만	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 15% 미만	15%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평가항목별 목표 달성 구간별 취득점수

평가항목 \ 취득점수		1구간(100점)	2구간(92.5점)	3구간(85점)	4구간(77.5점)	5구간(70점)
'26년도 적정배정 목표 달성률	A그룹	98% 이상	93% 이상 - 98% 미만	88% 이상 - 93% 미만	86% 이상 - 88% 미만	86% 미만
	B그룹	100% 이상	95% 이상 - 10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88% 이상 - 90% 미만	88% 미만
'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100% 이상	95% 이상 - 10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88% 이상 - 90% 미만	88% 미만

* '26년 적정 배정 목표인원 달성률 : A그룹과 B그룹 분류 기준
  - A그룹 : 목표값 인원이 최초 배정인원 대비 같거나 증가한 지방청(목표인원 ≥ 최초 배정인원)
  - B그룹 : 목표값 인원이 최초 배정인원 대비 감소한 지방청(목표인원 < 최초 배정인원)

지표명 : 4-01.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26년 배정인원 대비 소집자원율>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자원율(%)	**237.9**	**376.9**	**183.8**	**192.6**	**248.4**	**157.6**	**231.4**	**165.5**	**165.4**	**188.1**	**213.5**	**209.5**	**280.8**	**220.2**	**164.1**
'26년 배정	22,235	3,266	1,995	2,167	3,315	1,739	1,788	467	820	900	1,179	327	2,206	1,840	226
'26년 연초자원	101,280	23,680	6,989	7,993	15,809	5,216	7,978	1,475	2,577	3,227	4,830	1,308	11,783	7,713	702
소집대기	70,486	15,951	5,010	5,544	10,793	3,768	5,298	1,046	1,884	2,307	3,316	927	8,551	5,566	525
재학연기	30,794	7,729	1,979	2,449	5,016	1,448	2,680	429	693	920	1,514	381	3,232	2,147	177

* 소집자원율 산식: (소집대기자의 55.7% + 재학연기자의 44.3%)** / '26년 배정인원 × 100

** 최근 3년간 소집자의 평균 비율 적용

⑯ 점수 산출

○ **목표값 설정 기준값(유형) : 목표값 직접 부여**

등급(점수)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	C등급(77.5)	D등급(70)
평가항목별 취득점수	100점 이상	96점 이상 - 100점 미만	92점 이상 - 96점 미만	88점 이상 - 92점 미만	88점 미만

* ('26년도 적정 배정 목표인원 달성률 취득점수 + '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취득점수) ÷ 2

⑰ Data Source

'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결과서, '26년 추가배정 및 배정반납 결과보고서

* 가산율은 추후 별도 증빙자료 요구 예정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만 반영함

① 지표명 : 4-02. 사회복무요원 충원율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② 주관부서	사회복무정책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보충역제도 효율적 운영 및 국민체감 병무행정으로 포용국가 조성 기여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사회복무요원 적정 충원인원 유지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목표인원 대비 충원율 취득점수 + 가산점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복무기관 적정 충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 기여 2. 지표산식 설명 ○ 주기 : 평가 당해 연도 1. 1.~ 11. 30.

<소속기관별 목표 인원>

인 원	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북부	영동
목표 인원	20,509	3,083	1,785	1,962	2,985	1,597	1,700	441	731	817	1,104	327	2,036	1,715	226

* 목표인원 : '26년 11월말 기준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인원

① 지표명 : 4-02. 사회복무요원 충원율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소속그룹별 충원율* 취득점수 * **충원율** : (소집인원 / 목표인원) × 100

취득점수 / 소속그룹	1구간(100점)	2구간(92.5점)	3구간(85점)	4구간(77.5점)	5구간(70점)
A그룹	100% 이상	93% 이상~100% 미만	85% 이상 ~ 93% 미만	80% 이상 ~ 85% 미만	80% 미만
B그룹	97% 이상	85% 이상~97% 미만	75% 이상 ~ 85% 미만	70% 이상 ~ 75% 미만	70% 미만
C그룹	95% 이상	82% 이상~95% 미만	73% 이상 ~ 82% 미만	65% 이상 ~ 73% 미만	65% 미만

* A그룹 : 서울, 경인, 충남, 인천, 북부 / B그룹 : 부산, 경북, 전북, 경남, 제주 / C그룹 : 전남, 강원, 충북, 영동

【 가산 부여항목 및 가산점(최대 14점) 】

① 사회복지시설 목표인원 달성도 : **최대 5점**

가산점 / 소속그룹	3점	2점	1점
A그룹	100% 이상	98% 이상 ~ 100% 미만	96% 이상 ~ 98%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B그룹	90% 이상	82% 이상~ 90% 미만	74% 이상 ~ 82% 미만	66% 이상 ~ 74% 미만	65% 이상

* A그룹 : 서울, 경인, 인천, 북부
* B그룹 : 수도권 외 10개 지방청

② 전년대비 충원율 향상 : **1점** [단, 전년도 충원율(가산율 제외) 100 % 미달성 청에 한함]

③ 자원부족 지방청 재학생입영원 접수 받은 횟수 : **최대 4점**

가산점	4점	3점	2점	1점
구분	4회 이상	3회	2회	1회

④ 현역복무부적합자 소집 달성도 : **최대 4점** * 당해연도 편입인원 대비 소집인원

현부자 충원	4점	3점	2점	1점
	75% 이상	55% 이상 ~ 75% 미만	35% 이상 ~ 55% 미만	20% 이상 ~ 35% 미만

① 지표명 : 4-02. 사회복무요원 충원율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table>
<tr><td></td><td></td></tr>
<tr><td>⑯ 점수 산출</td><td>○ 목표값 설정 기준값(유형) : 목표값 직접 부여
<table>
<tr><td>등급(점수)</td><td>S등급(100)</td><td>A등급(92.5)</td><td>B등급(85)</td><td>C등급(77.5)</td><td>D등급(70)</td></tr>
<tr><td>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td><td>100점 이상</td><td>92.5점 이상~
100점 미만</td><td>85점 이상 ~
92.5점 미만</td><td>77.5점 이상 ~
85점 미만</td><td>77.5점 미만</td></tr>
</table></td></tr>
<tr><td>⑰ Data Source</td><td>○ ’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 보고서</td></tr>
</table>

① 지표명 : 4-0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② 주관부서	사회복무관리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		
③ 전략목표	보충역제도 효율적 운영 및 디지털 병무행정서비스로 국민복지실현지원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보충역 자원 활용의 효과성 제고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실현 및 권익보호 강화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점 수

⑬ 지표산식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 + 복무기관 실태조사 진도율 + 복무지도교육 이수율 + 가/감점)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 복무기관 실태조사 연중 균형 실시, 복무지도교육 적정 이수, 사기진작 활동, 성과향상 노력 등을 통해 복무규정위반자 감소 및 권익보호 강화

2. 지표산식 설명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①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 * 평가기간 (1.1. ~ 11. 30.)	○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율 = 100 - {(복무규정위반 인원/전체 복무인원) × 100} * 복무규정위반 인원 : 복무이탈 고발인원 + 복무의무위반 고발인원 * 전체 복무인원 : 1~11월까지 월별 복무인원 평균 ○ **목표값 : 99.62%**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24년, '25년 11월 기준 전국 평균 99.58%보다 0.04%p 상향, 전년 99.62% 동일한 목표값 설정	70점

구 분	평균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평균	99.58	99.75	99.47	99.47	99.71	99.68	99.68	99.62	99.54	99.70	99.30	99.85	99.56	99.38	99.51
'25년	99.58	99.80	99.48	99.47	99.63	99.72	99.69	99.55	99.65	99.55	99.34	99.84	99.56	99.37	99.57
'24년	99.58	99.70	99.45	99.46	99.78	99.63	99.66	99.68	99.43	99.84	99.26	99.86	99.55	99.38	99.44

실적	99.62% 이상	99.62%미만 ~ 99.47%	99.47%미만 ~ 99.32%	99.32%미만 ~ 99.17%	99.17%미만 ~ 99.02%	99.02%미만
점수	70점	69점	68점	67점	66점	65점

① 지표명 : 4-0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 가 기 준</th><th>배점</th></tr>
<tr>
<td>②
복무기관
실태조사
진도율

* 평가기간
(1.1. ~ 9. 30.)</td>
<td>○ 실태조사 진도율 = (분기말 누계 실태조사 실시기관 / 연간 실태조사 계획) × 100
* 실태조사 실시기관 : 방문조사(정기+수시) + 서면조사 기관의 수
* 실태조사 계획 : '26년 자체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조사기관의 수
○ 실태조사 기간 : '26. 1. 1. ~ 9. 30.
○ 산출방식 : 매분기 익월 15일 기준 사회복무포털 등록 및 지방청 분기보고서 기준
○ 목표값 : 분기별(누계) 목표값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table>
<tr><th>구분</th><th>1분기</th><th>2분기(누계)</th><th>3분기(누계)</th></tr>
<tr><td>실태조사율</td><td>10%이상</td><td>45%이상</td><td>75%이상</td></tr>
</table>
<table>
<tr><th>실적</th><th>매분기 달성 시</th><th>1회 미달 시</th><th>2회 미달 시</th></tr>
<tr><td>점수</td><td>10점</td><td>9점</td><td>8점</td></tr>
</table>
* 매분기 실태조사율 달성, 미달 시 미달한 분기마다 -1점</td>
<td>10점</td>
</tr>
<tr>
<td>③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이수율

* 평가기간
(1.1. ~ 11. 30.)</td>
<td>○ 복무지도교육 이수율 = (복무지도교육 수료인원/복무지도교육 계획인원) × 100
* 복무지도교육 : 나래과정, 새롬과정, 이음과정
* 교육기간 : '26. 1. 1. ~ 11. 30.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으로 산정
○ 목표값 : 10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26년 복무지도교육 계획인원
<table>
<tr><th>구분</th><th>계</th><th>서울</th><th>부산
울산</th><th>대구
경북</th><th>경인</th><th>광주
전남</th><th>대전
충남</th><th>강원</th><th>충북</th><th>전북</th><th>경남</th><th>제주</th><th>인천</th><th>경기
북부</th><th>강원
영동</th></tr>
<tr><td>계</td><td>1,510</td><td>184</td><td>164</td><td>155</td><td>182</td><td>109</td><td>118</td><td>25</td><td>55</td><td>46</td><td>111</td><td>24</td><td>194</td><td>117</td><td>26</td></tr>
<tr><td>나래</td><td>710</td><td>97</td><td>92</td><td>75</td><td>77</td><td>50</td><td>51</td><td>12</td><td>23</td><td>18</td><td>58</td><td>15</td><td>77</td><td>54</td><td>11</td></tr>
<tr><td>새롬</td><td>400</td><td>48</td><td>38</td><td>39</td><td>46</td><td>34</td><td>24</td><td>6</td><td>19</td><td>14</td><td>34</td><td>6</td><td>46</td><td>39</td><td>7</td></tr>
<tr><td>이음</td><td>400</td><td>39</td><td>34</td><td>41</td><td>59</td><td>25</td><td>43</td><td>7</td><td>13</td><td>14</td><td>19</td><td>3</td><td>71</td><td>24</td><td>8</td></tr>
</table>
<table>
<tr><th>실적</th><th>100% 이상</th><th>100%미만 ~ 98%</th><th>98%미만 ~ 96%</th><th>96%미만 ~ 94%</th><th>94% 미만</th></tr>
<tr><td>점수</td><td>20점</td><td>19.2점</td><td>18.4점</td><td>17.6점</td><td>16.8점</td></tr>
</table>
* 교육과정 기수별 교육대상 선발 시 통지대상이 계획인원보다 부족함이 객관적 자료(교육생 선발통지 화면 및 엑셀명부, 복무기록관리(서면) 등)로 확인된 인원수에 한해 '수료'로 인정
※ 선발 대상자등록일자 기준 : 2021. 1. 1. ~ 선발일자 / 수료인정 예시 : 교육기간 중 복무중단</td>
<td>20점</td>
</tr>
</table>

① 지표명 : 4-0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④
가/감점

* 평가기간
(1.1. ~ 11. 30.)

< 가점 >

○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 홍보활동 : 2.5점

* 사회복무요원 모범복무사례, 기고문만 인정 / * 중앙언론 1건은 5건으로 인정

기관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기북부, 강원			제주, 강원영동		
실적	10건 이상	7~9건	5~6건	8건 이상	6~7건	4~5건	4건 이상	3건	2건
가점	2.5점	1.5점	1점	2.5점	1.5점	1점	2.5점	1.5점	1점

○ 기관장 주관 복무기관 방문 : 2.5점

* 복무기관담당자 전문교육 방문실적 포함(지방청별 1회만 인정)

실적	10회 이상	7~9회	5~6회
가점	2.5점	1.5점	1점

* 기관장 유고 시 해당 기간 중 직무대리 또는 복무관리 부서의 장의 복무기관 방문실적도 인정
* 기관장 또는 복무관리부서장이 본청 주관(청장, 차장, 국장) 복무기관 방문 시 동행한 경우 방문실적으로 인정

○ 사회복무요원 디딤과정 적정 이수율 : 1점

* 교육기간 : '26. 1. 1. ~ 12. 2.*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으로 산정 * '26.11.30.입교자 포함

기관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경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 전북, 경남, 인천, 경기북부			강원, 제주, 강원영동		
실적	100% 이상 ~ 105% 미만	105% 이상 ~ 110%	110% 초과	110% 이상 ~ 115% 미만	115% 이상 ~ 120%	120% 초과
가점	1점	0.5점	0점	1점	0.5점	0점

상한 +6점 / 하한 -2점

① 지표명 : 4-0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④ 가/감점 * 평가기간 (1.1. ~ 11. 30.)	< 감점 > ○ 사건·사고 등 부정적 언론보도 : -2점 * 단순 사건사고, 개인일탈, 정책·제도의 문제는 감점대상에서 제외되고 복무관리 분야로 한정 예) 시설이용자 폭행·학대,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 등 * 동일 내용이 다수 확산된 경우 1건으로 계산/ 중앙·지역 동시 보도 시 중앙 1건으로 계산 실적 | 중앙언론 | 지역언론 | 비 고 감점 | 건당 - 0.5점 | 건당 - 0.2점 | 최대 -2점 * 언론내용이 평가기간 중 발생한 사건 · 사고 등인 적용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목표설정 기준값 유형 : 목표값 직접 설정 100점	
⑯ 점수 산출	등급(점수) | S등급(100) | A등급(92.5) | B등급(85) | C등급(77.5) | D등급(70) 취득점수 | 100점 이상 | 100점 미만~96점 이상 | 96점 미만~92점 이상 | 92점 미만~88점 이상 | 88점 미만	
⑰ Data Source	○ 운영현황(월보),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지방청 보고 자료(복무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 등)	

① 지표명 : 4-04.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율 및 성실복무율

★ 자체평가(주요정책) 연계

② 주관부서	산업지원과	⑥ 관리부서 (평가대상)	지방(지)청장(제주, 강원영동청 제외)		
③ 전략목표	보충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⑦ 지표유형	계 량	⑩ 목표계산 방식	최 종
④ 성과목표	보충역 자원의 일자리 지원 및 제도 운영 내실화	⑧ 평가/관리	평 가	⑪ 달성률 방식	포지티브
⑤ 이니셔티브	산업인력지원 효율적 복무관리·권익보호 강화	⑨ 측정주기	년	⑫ 지표단위	%

⑬ 지표산식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율(70점) + 성실복무율(30점) + 가·감점
⑭ 세부설명	1. 성과지표의 취지/목적 ○ 보충역 인력활용 효과성 제고 및 성실복무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국민체감 병무행정 구현 2. 지표산식 설명 ※ 지표산식 세부기준 : 붙임 참조
⑮ 목표값 설정 기 준	○ 목표설정 기준값 유형 : 목표값 직접설정 100점
⑯ 점수 산출	○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등급화 평가

등급(점수)	S등급(100)	A등급(92.5)	B등급(85)	C등급(77.5)	D등급(70)
실적점수	100점 이상	100점 미만~95점 이상	95점 미만~90점 이상	90점 미만~85점 이상	85점 미만

⑰ Data Source	○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활용 편입인원 및 실태조사 실적 산출, 지방청 보고 자료

지표산식 세부기준

□ 평가항목별 비중

계	실태조사율	성실복무율	가/감점
100점	70점	30점	+13점/-8점

□ 평가 세부기준

○ 항목별 배점내용(100점)

평 가 내 용	배점
합 계	100점
○ 실태조사율(70점) ○ 대 상 : '26. 1. 1. ~ 9. 30. 기간 중 병역지정업체 등 실태조사 실시 ○ 산 식 : 실태조사 실시 업체수/실태조사 대상 업체수 × 100 * **실태조사 실시 업체수 : 현장 조사 및 서면 조사 업체** * **실태조사 대상 업체수 :** '26.1.1. 업체수 기준이나, 매분기 변동 업체수 가감 **(증가)** 전입업체, 신규선정 중 복무인원 있는 업체, **(감소)** 전출업체, 취소업체 · 다만, 복무인원 없는 업체에 한해 3분기만 '대상 및 실시 업체'에 포함 ※ 서면조사 대상 : 전년도 현장조사 실시한 업체 중 평가결과 상위 20% 업체, 복무인원 없는 업체(7.31.기준) ※ 농어업분야 : 업무형태 등 고려 진도율 산출 제외 ※ 자연계 대학원, 과기원 : 분산조사 시 실태조사 완료 시점의 해당 분기 1건으로 인정 ※ 전출·전입한 업체 실태조사 실적은 전입한 지방청 실적으로 인정 ○ 산출방식 : 매분기 익월 15일, 병무행정시스템 실태조사 등록실적 및 지방청 분기보고서 기준 구 분 / 1분기 / 2분기(누계) / 3분기(누계) 실태조사율 / 15%이상 / 50%이상 / 100%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달성률 / 매분기 달성 시 / 1회 미달 시 / 2회 미달 시 / 3회 미달 시 실적점수 / 70점 / 67 / 64 / 61 * 매분기 실태조사율 달성, 미달 시 미달한 분기마다 -3점	70점
○ 산업지원인력 성실복무율(30점) ○ 기 간 : '25.12.1.~'26.11.30.(조사시점이 아닌 처분시점 기준) ○ 산 식 : 100 - {(복무부실 발생인원/산업지원인력 복무인원) × 100} · 복무부실 : 편입취소, 연장복무, 경고 등 복무위반 행정처분 건수 ☞ 가 중 치 : 편입취소(30) 연장복무(20), 경고 등(10) · 복무인원 : '26.11.30.기준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근무 복무관리인원 ○ 목표값 : 95.0% ['24년~'25년 전국 평균값(94.6%)의 0.4%p 상향] · 단, 목표값 보다 2년 평균값이 낮은 해당청은 전국 2년 실적 평균값 적용 구 분 / 합계 / 서울 / 부산 / 경북 / 경인 / 전남 / 충남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남 / 인천 / 북부 / 제주 / 영동 목표값 / 95 / 95 / 95 / 95 / 94.6 / 95 / 95 / 94.6 / 94.6 / 94.6 / 95 / 95 / 95 / 95 / 95 평균 / 94.6 / 97.1 / 98.5 / 97.3 / 92.4 / 96.2 / 95.7 / 81.1 / 91.6 / 90.7 / 95.7 / 98.8 / 100 / 0 / 100 '25년 / 94.6 / 99.4 / 100 / 97.6 / 89.3 / 97.0 / 98.6 / 85.4 / 83.3 / 91.7 / 95.1 / 97.5 / 100 / 0 / 100 '24년 / 94.6 / 94.7 / 97.1 / 97.0 / 95.5 / 95.4 / 92.9 / 76.9 / 100 / 89.7 / 96.3 / 100 / 100 / 0 / 100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달성률 / 100%이상 / 100%미만~98%이상 / 98%미만~96%이상 / 96%미만~94%이상 / 94%미만~92%이상 / 92%미만 실적점수 / 30 / 29 / 28 / 27 / 26 / 25	30점

○ 가/감점

<table>
<tr><th>구분</th><th>평 가 내 용</th></tr>
<tr><td>가점
(+8)</td><td>
<table>
<tr><th>주요내용</th><th>산식</th></tr>
<tr><td>홍보활동
(전문/산업/승선)</td><td>
<table>
<tr><th>구 분</th><th>4건이상</th><th>3건</th><th>2건</th></tr>
<tr><td>① 언론보도
* 모범복무사례, 기고문만 인정</td><td>3점</td><td>2점</td><td>1점</td></tr>
<tr><th>구 분</th><th>4건이상</th><th>3건</th><th>2건</th></tr>
<tr><td>② 병무행정설명회 현장 개최
* 대학·특성화·마이스터·직업계고교 재학생 대상</td><td>3점</td><td>2점</td><td>1점</td></tr>
<tr><th>구 분</th><th>3건이상</th><th>2건</th><th>1건</th></tr>
<tr><td>③ 청·차장,국장(본청) 정책현장방문 추진</td><td>2점</td><td>1점</td><td>0.5점</td></tr>
<tr><td colspan="4">* 기간 1.1.~11.30. / * 개최실적 및 언론 보도자료 보고 시 인정, ②, 타 과 합동개최 인정</td></tr>
</table>
</td></tr>
</table>
</td></tr>
<tr><td>가점
(+3)</td><td>
<table>
<tr><th>주요내용</th><th>산식</th></tr>
<tr><td>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율</td><td>
<table>
<tr><td>달성률</td><td>90%이상</td><td>90%미만~85%이상</td><td>85%미만~80%이상</td><td>80%미만~75%이상</td></tr>
<tr><td>실적점수</td><td>3</td><td>2</td><td>1</td><td>0.5</td></tr>
</table>
○ 기간 : '26. 1. 1. ~ 11. 30.
○ 산식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청별 목표인원 × 100
* 편입인원 : 정상편입, 현역부적합, 분할복무 모두 포함
○ 목표값 : '25년 편입인원 - ('25년 편입인원×'26년 소집자원감소율)
* '26년 소집자원감소율 = ('25년 자원-'26년 자원)/'25년 자원
※ 자원(당해년도 1. 1.기준) : 직권통지 연기자 등+연말 1~4순위자+재학연기자
<table>
<tr><th>구 분</th><th>합계</th><th>서울</th><th>부산</th><th>경북</th><th>경인</th><th>전남</th><th>충남</th><th>강원</th><th>충북</th><th>전북</th><th>경남</th><th>인천</th><th>북부</th><th>제주</th><th>영동</th></tr>
<tr><td>목표인원</td><td>1,418</td><td>264</td><td>57</td><td>123</td><td>303</td><td>49</td><td>138</td><td>14</td><td>47</td><td>32</td><td>108</td><td>213</td><td>66</td><td>3</td><td>1</td></tr>
<tr><td>'25 편입인원</td><td>1,733</td><td>313</td><td>84</td><td>161</td><td>380</td><td>65</td><td>167</td><td>20</td><td>54</td><td>39</td><td>116</td><td>239</td><td>90</td><td>4</td><td>1</td></tr>
<tr><td>자원감소율</td><td>(%)</td><td>15.6</td><td>32.6</td><td>23.7</td><td>20.2</td><td>24.6</td><td>17.4</td><td>28.4</td><td>12.5</td><td>17.6</td><td>7.1</td><td>11.0</td><td>26.6</td><td>13.6</td><td>22.6</td></tr>
</table>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td></tr>
</table>
</td></tr>
<tr><td>가·감점
(+2/-8)</td><td>
<table>
<tr><th>주요내용</th><th>산식</th></tr>
<tr><td>신규편입자 및
복무관리담당자
교육이수율
(전문/산업)</td><td>
<table>
<tr><th>구 분</th><th>90%이상~
92%미만</th><th>90%미만~
88%이상</th><th>88%미만~
86%이상</th><th>86%미만~
84%이상</th></tr>
<tr><td>1.1.~9.30. 편입자</td><td>-0.5점</td><td>-1점</td><td>-1.5점</td><td>-2점</td></tr>
<tr><th>구 분</th><th>81%이상~
83%미만</th><th>81%미만~
79%이상</th><th>79%미만~
77%이상</th><th>77%미만</th></tr>
<tr><td>복무관리담당자</td><td>-0.5점</td><td>-1점</td><td>-1.5점</td><td>-2점</td></tr>
<tr><td colspan="5">* '26.11.30. 복무자 및 업체 기준 전산입력건(복무관리담당자 교육은 6.30.까지 건만 인정)
* 복무인원 및 배정인원(현역·보충역 총괄배정 포함) 모두 없는 업체 제외</td></tr>
</table>
</td></tr>
<tr><td>소통간담회
및
합동 실태조사
(전문/산업)</td><td>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감점</th><th>1회 미실시</th><th>2회 미실시</th><th>3회 미실시</th><th>4회 미실시</th></tr>
<tr><td rowspan="2">① 병역지정업체장과 간담회
(매분기 1회, 대면·비대면)
* 지방청장 정책현장 방문 시 업체장 간담회 실적 인정</td><td>-0.5점</td><td>-1점</td><td>-1.5점</td><td>-2점</td></tr>
<tr><td>가점</td><td colspan="4">4회 초과 시 초과 횟수당 +0.5(최대 2점)</td></tr>
<tr><th>구 분</th><th>1회 미실시</th><th>2회 미실시</th><th>3회 미실시</th><th>4회 미실시</th></tr>
<tr><td>②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조사 업무협약 이행(매분기 1회)
* 예방 또는 신고에 의한 당일 합동 실태조사 해당</td><td>-0.5점</td><td>-1점</td><td>-1.5점</td><td>-2점</td></tr>
<tr><td colspan="5">* 기간 1.1.~11.30. * ①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② 노동청 관련공문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현황」 보고 시 인정
* 다만 ② 매분기(1분기는 4월말, 4분기는 9~11월말까지 완료) 미실시로 감점을 받은 경우이나, 연 4회 초과 실시한 경우는 초과 실시 횟수당 0.1.점 부여 (최대 1점까지 부여)</td></tr>
</table>
</td></tr>
</table>